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재 형

2011년 2월

#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지도교수 김 동 전

김 재 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김재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2월

An Analysis on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iles in Jeju Island during Joseon Dynasty

Kim Jae-Hyu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1.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An Analysis on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iles in Jeju Island during Joseon Dynasty

In its 500 year history from its beginning in 1392 until its transfer of judicial power to Japan in 1909, the rulers of Joseon dynasty had kept exiling a total of 261 persons to Jeju island.

Those who were exiled to the island consisted of people from a variety of statuses - royal family members including Gwanghaegoon who was a deposed king, royal maternal relatives, government officials, and women. They were placed in different spots in and near the island - Jejumok, Daejunghyun, Jeongeuhyun, or Choojado. Over the 500 years, exile punishments to Jeju by the royal court can be classified into six periods: the first era from Taejo, the first king of the dynasty, to Yaejong; the second from Seongjong to Seonjo; the third from Gwanghaegoon to Gyeongjong; the fourth from Yeongjo to Jeongjo, the fifth from Soonjo to the 17th year of Gojong; the sixth from the 18th year of Gojong to 1909.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types of crimes for which people were expelled to the island, which means that the changing political situations of the dynasty were reflected in different reasons for sending people to the island.

In most cases of the royal family member exile, the reason was for their involvement in rebellions. While those nominated as kings by rebel groups were, without exception, poisoned to death, other royal members could live more comfortably than other non-royal exiles, thanks to supports from the king or the chief administrator of the island.

Most of government officials exiled in the island were high-ranking or those belonging to the Samsa, who were privileged to meet the king in person. As persons from the influential group of the dynasty were frequently banished to it, Jeju got the image as the worst place of exile.

There were various reasons for being exiled, such as involvement in rebellion, being guilty by family and other association with criminals, refusal to king's order, dishonesty in the Gwageo examination, mis-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etc. But, in most cases, they were victimized for political reason.

Unlike other types of punishment, there were no fixed terms for exiles. Everything depended upon later decisions of the court. An exile was forgiven a month after his arriving at the island, and another died in the island after living more than thirty years under exile. The reason for differences in exile terms derived from the fact that many of the cases were retried and sentenced again in the court. Among the forty eight exiles who died in the island, twenty are found to have been forced to drink poison to death within two years of their arrival at the island, proving that they were subsequently resented to death. Given that there had never been a case of anyone banished to Jeju being subsequently relocated to another worse place by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court, which were frequent in those days, we can figure out that Jeju was the place where severe felons were expelled, and that being exiling to Jeju was the severest punishment short of death sentence.

Those sentenced to be exiled, on the way to the island, usually passed Haenam, Youngam, or Gangjin and landed the island by ship through ports like Byeoldopo, Hwabookpo, or Jocheongwan, all of which were near Jejumok, capital of the island. After reporting their arrival to Moksa, chief administrator of the island, they went on to the designated spot of exile. Since exiles would spend time writing books or teaching students, there still

remain some of the manuscripts of their books in the island, which serve as good sources to look into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in those days.

It is interesting that,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sentencing to be exiled to the island became routinized, the number of passers from Jeju of Moongwa, one of the Gwageo examinations, increased. Contemporary theories on neo-confucianism spread the island through exiles and the island confucianism could be connected with that of Seoul, thanks to them.

Out of all the exiles over the years, ten persons settled permanently in the island, in some cases with their families, in other cases getting married with Jeju women, starting to root new family lines in the island.

The existence of the exiles imposed considerable economic burden on island residents. Though, in principle, required to be self-reliant financially, they were supported actually by the island authorities and residents. It was not a big problem in normal times. However, in years of bad harvest, or when too many felons were sent to the island at a time, the island authorities felt burdened and asked the central government to move some of them to other inland places.

Since Jeju is located farthest from Seoul, it was the island where the largest number of criminals were exiled. Characteristically, most of those exiled to the island belonged to the ruling group of the dynasty. Dismal descriptions of Jeju in their letters and books contributed to formation of a negative image of the island among people over the peninsula in those days. The facts that not a few exiles died in the island under their exile, and that there had never been a case of anyone being relocated to another worse place of exile by additional punishment lead us to believe that Jeju must have been the farthest and worst place of exile in Joseon era.

# 목 차

## Abstract

I. 머리말 .....	1
II. 제주유배의 유래와 유형 .....	5
1. 제주유배의 유래 .....	5
2. 제주유배와 유형 .....	6
III. 제주유배인의 실태분석 .....	10
1. 시기·지역별 분류 .....	10
2. 신분·계층별 실태 .....	23
3. 유배사유별 실태 .....	34
4. 유배기간별 실태 .....	36
IV. 제주유배인의 노정과 유배생활 .....	40
1. 제주유배인의 노정 .....	40
2. 제주유배인의 유배생활 .....	45
V. 유배인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 .....	53
1. 유학의 전파와 발달 .....	53
2. 유배인과 입도조의 형성 .....	55
VI. 맺음말 .....	59
부록 .....	63
참고문헌 .....	78



## 표 목 차

〈표 1〉 제주유배인에게 적용된 유형의 집행방법 .....	7
〈표 2〉 시기·지역별 제주유배인 현황 .....	11
〈표 3〉 왕족 유배인 .....	23
〈표 4〉 관료출신 제주유배인 품계 .....	27
〈표 5〉 종교관련 유배인 .....	30
〈표 6〉 여성유배인 .....	32
〈표 7〉 환관유배인 .....	33
〈표 8〉 유배사유별 종류 .....	34
〈표 9〉 제주유배인의 유배기간 .....	36
〈표 10〉 제주유배인의 사망사유 .....	37
〈표 11〉 제주유배인 이배지역 .....	38
〈표 12〉 제주유배인의 유배경로 .....	42
〈표 13〉 제주도 문과 입격자 분류.....	53
〈표 14〉 제주 열녀의 신분·시기별 분포 .....	55
〈표 15〉 제주유배인 중 입도조 .....	56

## 그림 목 차

〈그림 1〉 시기·지역별 제주유배인 분포 .....	12
〈그림 2〉 제주유배인의 노정 .....	42



## I. 머리말

조선은 유학을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조선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사상이자 지도이념이었다. 형벌에 있어서도 조선은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 나와 있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형인 오형제도(五刑制度)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오형제도 중 유형의 경우 죄인을 다른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는 형벌로서 명나라와 조선은 영토의 크기부터 달라 거리 설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현실에 맞는 법이 필요했고 세종 12년(1466)에 이르러 유형이 조선의 영토에 맞게 재조정되면서 제주도는 최악의 유배지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유배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유형(流刑)이란 단어와 유배(流配)라는 단어를 혼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유형(流刑)’과 ‘유배(流配)’가 같은 의미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형(流刑)은 죄인을 귀양 보내는 형벌, 그리고 유배(流配)는 죄인을 귀양 보내는 일이다<sup>1)</sup>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유형은 형벌로, 유배는 형벌에 대한 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유배의 범주에 유형과 도형(徒刑)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과 유배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제주유배인의 경우 모두 유형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유배가 유형이 집행된 유배인이 제주 배소로 이동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제주유배인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로 유배된 유배인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연구자 대부분이 대략적으로 예상할 뿐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유배인 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sup> 또한 일부 유배인을 통해 나타난 유배문화를 논하면서 교학 활동이나 저술활동 등 제주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부분만 언급되는 사례가 대부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 고창석은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에서 기록된 유배인은 160여명으로 나타났으나 그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양순필은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에서 제주도로 유배된 지식인이 49명이라 하고 있다.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에서는 총 148명의 제주유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며, 양진건의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에서는 제주도 유배되는 수가 총 104명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배인 수는 대략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고 유배인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과 제주유배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유배인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보다 체계적인 유배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고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제주유배인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형제도의 특징과 제주유배인의 특징이 함께 연구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동시에 이 문제를 다룬 연구 자료는 미비하다. 또한 유형이 조선조의 역사임과 동시에 제도라는 이중적인 특징 때문에 역사학과 법학에서 자신들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어 조선조 제주유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분석, 그리고 조선의 법체계까지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유배와 관련한 연구를 검토하면 조선조의 유형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지철호<sup>3)</sup>와 한창덕<sup>4)</sup> 등의 연구가 있고 조선조 유배연구로 심재우<sup>5)</sup>와 김경숙<sup>6)</sup>의 연구가 있다. 지철호는 유형제도의 기원과 조선조에 형벌로 정착하기까지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한창덕은 유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유형을 법정형과 관습형으로 구분 지으면서 유형의 종류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이 두 논문은 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배인의 유배생활 등 유형이 확정되고 나서 그 후의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심재우는 15·16세기 관료 출신 유배인을 분석하면서 유형의 종류와 유배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김경숙은 개인문집 등 일기류(日記類)를 통해 유배의 시각을 형벌적인 측면보다는 유배인 개개인의 모습을 통해 유배가 가지는 특징과 유배노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주유배와 관련된 연구로는 양순필<sup>7)</sup>과 고창석<sup>8)</sup> 등이 있다. 양순필은 조선조 제주유배인의 문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제주 유배문학을 통해 조선조

3) 지철호, 「조선전기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4) 한창덕,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제92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6)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통권 67호, 역사문제연구소, 2004.

———, 「17세기 후반 한 유생의 유배살이」 『선비문화』 제12호, 남명학연구원, 2007.

7)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8) 고창석,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6.

유배문학의 성격을 논함과 동시에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유배지로서 제주도의 특징을 논하였고 전국의 유배인을 최초로 설정하였다. 고창석은 조선조 제주유배인의 동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유배노정과 유배생활, 그리고 제주도가 최악의 유배지로 인식되는 이유 등 제주유배의 특징에 대해 다양하게 논하였다. 위의 연구와 함께 김봉현의 저서 『제주도유인전(2005)』과 양진건의 저서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이하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2005)』은 제주유배인에 대한 사유와 제주 유배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했다. 『제주도유인전』과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은 조선조 제주유배인의 실태와 분석에 대한 단편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을 뿐 제주유배인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배지로서 제주도가 가지는 특징과 함께 제주유배인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도로 유배된 유배인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sup>9)</sup>, 『승정원일기』<sup>10)</sup>,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을 중심으로 참고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 또한 위의 사료를 통해 재확인 작업을 거쳐 정확한 유배인 수를 설정,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된 조선시대 유배인을 살펴보면 245지역에 700명이 유배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11)</sup> 제주도의 경우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추자도 등 4개 지역에 49명이 유배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지역에 261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기준에 따라 그 수는 달라지겠지만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의 경우 『한국인명대사전』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문·무신 관료, 왕족의 내용만 존재할 뿐, 유생 등 다른 신분의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조선시기에 유배된 인물들은 기존에 연구된 700명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유배인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제주유배인을 261명으로 설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제주도에 유배를 보내고 다시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는 인물을

9) 본고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은 2007년 12월2일자 온라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했음.

10) 본고에서 인용한 『승정원일기』는 온라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를 참조했음.

11)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20쪽.

제주유배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에 유배된 것은 확인되나 후속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 역시 개인문집 등을 분석하여 제주유배가 확인된 인물의 경우 제주유배인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었던 『제주도유인전』과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에 나와 있는 유배인과 『한국인명대사전』<sup>12)</sup>,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제주도 유배유무를 확인하였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포함되는 인물을 제주유배인이라 정의 내렸으며 지역명이 나타나지 않은 인물들은 저술활동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제주유배인에 포함시켰다.

우선 II장에서는 제주유배의 유래와 조선조 유배지로서 제주도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와 함께 유배인에게 적용된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III장에서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261명을 시기·지역별, 신분·계층별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유배사유와 유배기간을 분석하여 제주유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제주도로 유배되는 노정과 제주도로 온 유배인의 생활에 대해 개인문집 등을 통해 파악하였고 V장에서는 유배인들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을 학문, 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제주유배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제주유배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가 최악의 유배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면서 유배지로서 제주도의 성격을 재정립 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 유배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연구를 전개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태조 원년(1392)에서 조선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의 처리권이 일본으로 이양하는 기유각서가 만들어진 순종 2년(1909) 7월 12일로 국한시키며, 지역적으로는 행정구역상 현재 제주도에 속하는 제주도와 추자도로 한정시킨다.

12) 한국인명대사전 편집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95.



## II. 제주유배의 유래와 유형

### 1. 제주유배의 유래

제주도가 유배지로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유배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이지만 실제 제주유배가 나타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다. 원나라는 제주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의해 충렬왕 원년(1275)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직접 제주도를 관리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마를 양육하면서 일본을 공격하려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원나라의 죄수들을 제주도로 유배시키면서 제주유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3)</sup> 그 이후 명나라에서도 원나라 잔존세력을 평정한 후, 양왕(梁王)의 가숙인 박박태자(拍拍太子)·육십노 및 애안첩본아(愛顔帖本兒), 그리고 막북을 정벌하였을 때 귀순해 온 달달친왕(達達親王) 등 80여호를 모두 제주도에 안치시킨 바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때까지 고려가 아닌 다른 국가의 인물들이 제주도로 유배되는 사례 일 뿐 실질적으로 고종 45년(1258) 이후에 제주유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종 45년(1258) 정월에 송길유,<sup>15)</sup> 충혜왕 4년(1343) 4월에 승 학선,<sup>16)</sup> 충목왕 3년(1347) 6월에 조득구,<sup>17)</sup> 동왕 4년(1348) 12월에 승 종범,<sup>18)</sup> 공민왕 4년(1355) 10월과 12월에 임군보<sup>19)</sup>와 김용<sup>20)</sup>을 각각 제주도에 유배시켰다. 더욱이 동왕 22년(1373) 12월에는 승 석기를 제주도 수정사에 보내어 안치시키도록 하였으나 몰래 북변으로 망명한 일이 있었다. 즉 제주도는 이민족의 유형지에서 시작되었지만

13) 『고려사』 28권 충렬왕 원년4월 임자조. 「元 流盜賊百餘人 于耽羅」, 본고에서 인용한 고려사는 온라인 고려사를 참조했음. (<http://gate.dbmedia.co.k>)

14) 고창석, 「원명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21~22쪽.

15) 『고려사』 권24 고종 45년 1월 계축조. 「流大將軍宋吉儒 于楸子島」.

16) 『고려사』 권36 충혜왕 계미후4년 4월 경자조. 「王 下僧鬻仙獄 鬻仙 善琴畫醫術 亦解漢蒙語 王 敬重 稱爲師傅 上殿不拜 時人疾之 至是 矯旨放囚 王怒 命監察司鞫之 流濟州」.

17) 『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3년 6월. 「貶趙得球 于耽羅」.

18) 『고려사』 권37 충목왕 4년 12월 을축조. 「杖流僧宗範 于濟州」.

19) 『고려사』 권38 공민왕 4년 10월 계유조. 「流密直副使任君輔 于濟州」.

20) 『고려사』 권38 공민왕 4년 12월 신미조. 「流知都僉議司事金鏞 于濟州」.

고려의 유배지로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조선 개국 후 본격적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순종 2년(1909) 일본에 의해 사법권이 이양될 때까지 261명이라는 많은 인물들이 유배되는 유배지로 고착되었다.

## 2. 제주유배와 유형

유형의 종류와 그 용어설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등 대전에 나와 있는 유형을 법정형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형으로 정의내리면서 모두 유형의 종류로 받아들이는 주장과<sup>21)</sup> 용어자체가 유형의 뜻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형의 종류로 인식하기 보다는 유형의 집행방법이며 협의(狹義)의 유형과 대비하여 광의(廣義)의 유형이라 주장<sup>22)</sup>으로 나뉘고 있다. 조선의 유형 중 법제화되어 명시되어 있는건 유(流) 2천리, 2천5백리, 3천리이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데 이 3가지 유형에 대한 언급보다는 유배지와 유배를 어떠한 형식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만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란으로 논문들마다 다양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 확인된 제주유배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주유배에서 나타나는 유배 용어를 살펴보면 <표 1> 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유배인의 유배생활면을 봤을 때 크게 일반적인 유배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배소에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위리안치(圍離安置)와 천극안치(楸棘安置), 그리고 병졸로써 군역을 지는 형벌인 충군(充軍), 신분이 노비로 좌천되는 위노(爲奴)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제주유배에 있어 31개의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그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부 용어의 경우 1,2 차례만 언급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표 1> 의 용어를 유형의 종류로 정의 내리기 보다는

21) 한창덕,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2) 지철호, 「조선전기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집행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제주유배인에게 적용된 유형의 집행방법

유형의 집행방법		유배 인수	유형의 집행방법		유배 인수	유형의 집행방법		유배 인수
안치 (安置)	안치(安置) <sup>23)</sup>	22	정배 (定配)	정배(定配) <sup>24)</sup>	26	기타	부처(付處) <sup>25)</sup>	1
	위리안치 (圍籬安置) <sup>26)</sup>	39		절도정배 (絶島定配) <sup>27)</sup>	17		정역(定役) <sup>28)</sup>	2
	절도안치 (絶島安置) <sup>29)</sup>	15		물한년정배 (勿限年定配) <sup>30)</sup>	6		이배(移配) <sup>31)</sup>	11
	천극안치 (楸棘安置) <sup>32)</sup>	1		위노정배 (爲奴定配) <sup>33)</sup>	1		서민강등 (爲庶民) <sup>34)</sup>	1
	감사안치 (減死安置) <sup>35)</sup>	1		해도정배 (海島定配) <sup>36)</sup>	1		가극(加棘) <sup>37)</sup>	1
유형 <sup>38)</sup>	1년유형	2	천극 (楸棘)	천극(楸棘) <sup>39)</sup>	5	이치(移置) <sup>40)</sup>	5	
	2년유형	1		기타	절도천극 (絶島楸棘) <sup>41)</sup>	1	도배(島配) <sup>42)</sup>	1
	5년유형	1			위노(爲奴) <sup>43)</sup>	23	배도압거 (倍道押去) <sup>44)</sup>	1
	7년유형	2			충군(充軍) <sup>45)</sup>	8	물한년도배 (勿限年島配) <sup>46)</sup>	1
	10년유형	4	기타	배(配) <sup>47)</sup>	17	미상	32	
	15년유형	3						
	종신유형	10						
						총(명)	261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 23) 『태종실록』 18권 9년 10월 14일 임자조. 「副司直禹導于三陟 押無咎 無疾置濟州」.
- 24) 『영조실록』 99권 38년 6월 1일 임진조. 「上命 前參判韓光肇大靜縣定配」.
- 25) 『연산군일기』 53권 10년 5월 19일 무신조. 「義禁府啓 洪常 金克恢 沈淡 元奮罪當斬. 傳曰 減死贖杖 付處遠方」.
- 26) 『헌종실록』 7권 6년 9월 4일 신묘조. 「鞫囚罪人正喜 大靜縣圍籬安置」.
- 『인조실록』 36권 16년 4월 2일 을미조. 「上命 送夏節衣服之資于濟州光海圍籬處」.
- 27) 『영조실록』 33권 9년 1월 14일 병신조. 「權瑩甘心時象 不顧君父 屏諸四裔 非瑩而誰 大靜縣絶島定配」.
- 28) 『연산군일기』 56권 10년 11월 14일 경자조. 「傳曰 雲峯付處內官朴仁孫曾命放送 [...] 更定役極邊」.
- 29) 『정조실록』 4권 1년 8월 11일 갑진조. 「趙貞喆 南興老 大變 奇同減死絶島安置」.
- 30) 『영조실록』 65권 23년 5월 23일 임자조. 「金遇允濟州牧勿限年定配」.
- 31) 『영조실록』 74권 27년 7월 2일 병인조. 「移配李存中于旌義縣」.
- 32) 『숙종실록』 20권 15년 2월 4일 임인조. 「況時烈於國本已建 [...] 濟州牧安置 嚴加楸棘 尹壻等事亦從之」.
- 33) 『순조실록』 13권 10년 2월 6일 경인조. 「金鼎煥仍前嚴囚 待拷訊 [...] 靈巖郡楸子島 減死爲奴定配」.
- 34) 『영조실록』 125권 51년 7월 3일 무신조. 「尹復厚大靜縣爲庶民」.
- 35) 『철종실록』 4권 4년 11월 27일 무진조. 「崔鳳周靈巖郡楸子島減死安置」.
- 36) 『영조실록』 52권 16년 11월 2일 기사조. 「上將酌處遠材 [...] 遂命配遠材于海島」.
- 37) 『정조실록』 27권 13년 5월 12일 무진조. 「移配趙時偉于濟州牧 加棘」.
- 38) 『고종실록』 34권 33년 4월 18일(양력). 「現囚徐周輔 鄭丙朝 金經夏 李台璜은 流終身에 處호고 鄭萬朝 禹洛善은 流十五年에 處호고 全峻基 李範疇은 流十年에 處호고 洪祐德은 役一年에 處호고 鄭寅興은 放免호야 各其自新호 路를 開게 호라」. 동왕 35권 34년 3월 15일(양력). 「十五日 法部大臣奏 特旨流七年罪人 李容鎬 張允善 流十年罪人韓善會 金思燦 李根旱等 竝濟州牧定配所何如 允之」.
- 39) 『헌종실록』 8권 7년 1월 10일 병신조. 「李鶴秀施以楸子島楸棘之典」.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유 2천리, 2천5백리, 3천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sup>48)</sup> 죄인이 명을 받아 유배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명과 함께 <표 1>의 내용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배되는데, 세종 12년(1466)에 유형의 종류인 유 2천리, 2천5백리, 3천리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되면서<sup>49)</sup> 유형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지역 명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유형의 종류가 지역 명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과 <표 1>과 같은 용어들은 법으로 규정된 유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점, 비슷한 의미이지만 용어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유형의 종류로 규정짓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유형을 큰 의미로 해석할 때 유배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고 그 속에서 유배의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형의 종류로 동일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그보다 하위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표 1>의 용어들은 유형의 집행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표 1>과 같이 다양한 집행방법을 통해 제주로 유배되지만 위리안치와 천극안치, 충군, 위노, 서민강등 등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용어만 다를 뿐 유배인의 유배생활에 있어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형의 집행방법을 제주유배인의 사례로 살펴보면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된 광해군은 인조 15년(1637) 제주목으로 이배되어 위리안치 되었고<sup>50)</sup> 김정희는 현종 6년(1840) 윤상도의 흉소사건에 연좌되어 대정현으로 위리안치 되었다.<sup>51)</sup> 그리고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으로 인해 대정현으로 유배된 민암은 위리안치에다 천극을 더해 유배되었다.<sup>52)</sup> 위리안치와 천극안치의 경우 유배지 주위에 가시울타리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유배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써 일반적인 유형 중에

40) 『인조실록』 18권 6년 5월 26일 병술조. 「臣等曾論瑛妻子處置事矣 物情皆以爲 珍島狹小 移置濟州」.  
 41) 『정조실록』 13권 6년 6월 28일 기사조. 「罪人李最中 絕島荊棘」.  
 42) 『영조실록』 83권 31년 3월 12일 을유조. 「掌令李椿啓 虎窟逆 往擧所無 而李巨源製其教文 其心可見 請遠竄 上命島配」.  
 43) 『연산군일기』 31권 4년 9월 16일 신해조. 「裕孫奸猾之徒 若屏諸北道 則必投野人 請流濟州爲奴」.  
 44) 『영조실록』 66권 23년 12월 23일 기묘조. 「罪人任命周大靜縣梟棘 倍道押去」.  
 45) 『고종실록』 16권 16년 3월 13일 정사조. 「李禧巖 原榜目拔去 濟州牧充軍」.  
 46) 『영조실록』 79권 29년 4월 14일 기해조. 「命進士李聖述大靜縣勿限年島配」.  
 47) 『광해군일기』 133권 10년 10월 15일 경오조. 「配金梯男妻盧氏于濟州」.  
 48) 유 2천리의 경우 19건, 유 2천5백리는 6건, 유 3천리는 121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형벌과 죄인과 관련되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49) 본고 63쪽, <부록1> 조선조 유배지설정기준 참조.  
 50) 『인조실록』 36권 16년 4월 2일 을미조. 「上命 送夏節衣服之資于濟州光海園籬處」.  
 51) 『현종실록』 7권 6년 9월 4일 신묘조. 「鞫囚罪人正喜 大靜縣園籬安置」.  
 52) 『숙종실록』 20권 15년 2월 4일 임인조. 「況時烈於國本已建 [...] 濟州牧安置 嚴加梟棘 尹堦等事亦從之」.

서 가장 중벌이다. 즉 정치적으로 중죄인에게 주로 행하는 형벌이면서 외부의 진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추방과 격리라는 유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형벌이다. 제주도로 유배되는 경우 위리안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육지에서는 외부인의 출입, 유배인의 이동을 제한하였지만 제주도의 위리안치의 경우 이동은 제한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하지 않았다.

충군의 경우 도형, 유형에 준하는 형벌로 죄의 경중에 따라 원근지방의 군영에 소속시켜 군역을 종사하게 하는 것인데 주로 무관들이 주로 충군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광주목사 이희손이 충군으로 제주도로 유배되는데 이는 무관직 관료 외에도 외관직 관료 역시 죄에 따라 충군을 집행 받는 경우도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부정자 역시 충군으로 제주로 유배되었는데 충군의 성격과 조선사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관리 등용방법이 과거(科擧)라는 점을 봤을 때 과거부정을 줄이기 위해 다른 죄보다 강한 형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군이 군역을 지는 형벌이라면 위노는 유배인의 신분을 노비로 좌천시키면서 역을 지게 하는 형벌이다. 위노와 위노정배로 제주도로 유배된 인물은 총 22명인데 관료가족, 종교인, 유생, 환관 등 다양한 신분이 위노로 제주도로 유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회에 지배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왕족, 외척, 관료 등의 죄인에게서는 위노로 유배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노는 권력이 없는 신분에서 주로 집행되었던 형벌이자 신분을 강등시키는 의미에서 유형 중 가장 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 여성유배인 7명 중 왕족여성 2명을 제외한 5명 모두 위노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 Ⅲ. 제주유배인의 실태분석

#### 1. 시기·지역별 분류

제주유배인의 분석에 앞서 유배인의 시기별 특징을 먼저 구분 지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0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지만 유형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도별 구분보다는 왕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지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500년이란 긴 시간과 27명의 왕을 각각 나누어서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그 양이 광범위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유배를 분류하고자 할 때 집권 세력의 이동과 정책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인 특징을 함께 분석하여 시대를 구분 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조선조 제주유형을 6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태조 원년(1392)부터 예종 1년(1469. 11)까지를 1기, 성종 즉위년(1469. 11)부터 선조 41년(1608. 1)까지를 2기, 광해군 즉위년(1608. 2)부터 경종 4년(1724. 8)까지를 3기, 영조 즉위년(1724. 8)부터 정조 24년(1800. 7)까지를 4기, 순조 즉위년(1800. 7)부터 고종 17년(1880)까지를 5기, 고종 18년(1881)부터 순종 2년(1909)까지를 6기로 분류하였다.

1기는 조선 개국 후 새로운 왕조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개국공신, 외척과의 갈등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2기는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을 시작으로 붕당정치의 특징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새로 정계에 진출한 사람과 기존 세력인 훈구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4회의 사화와 관련하여 제주로 유배되면서 1기와는 달리 정치적인 성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3기는 광해군 이후 붕당정치가 조선사회에 정착하면서 이로 인한 사림 내부의 대립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난다. 3기 이후부터는 1기, 2기와는 달리 제주유배의 성격이 사림 내부의 갈등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제주유배가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기는 영·정조 즉위와 관련된 정치문제와 붕당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영·정조시기의 정책변화로 제주

유배인의 수가 급증한 시기로 즉위반대문제와 탕평정치를 비판하는 사유로 인해 제주유배가 집중되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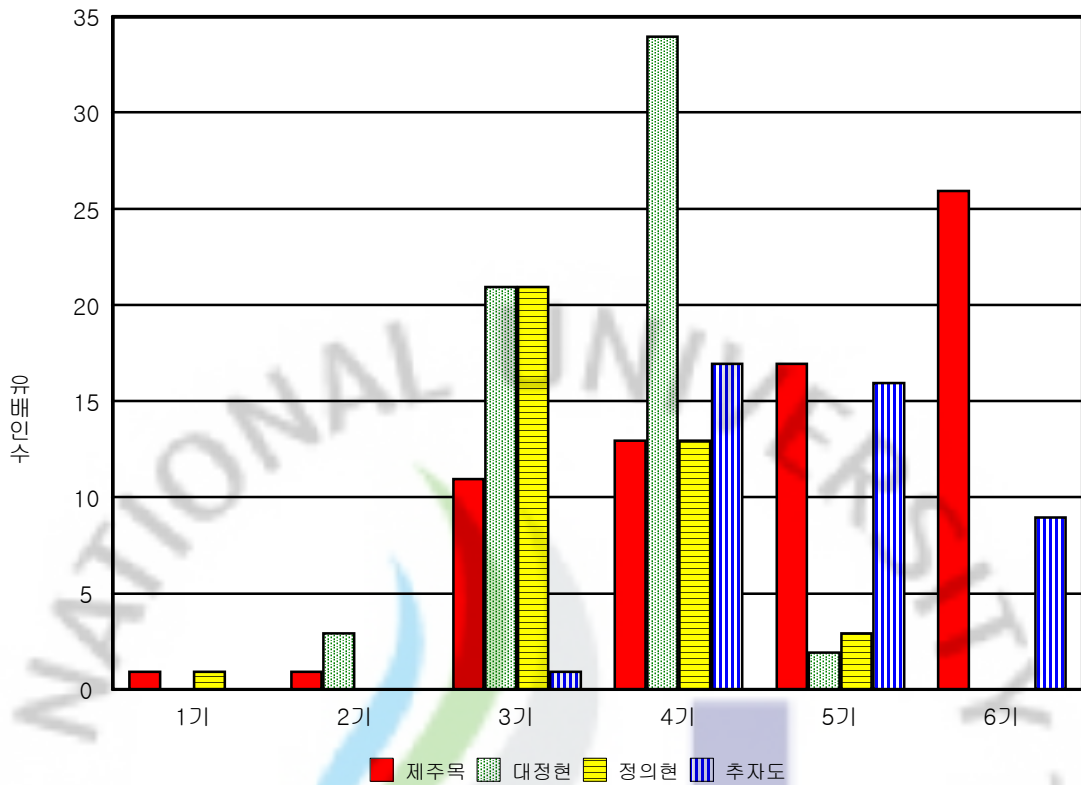
5기는 순조 이후 세도정치의 시작과 함께 조선 말 나타난 사회혼란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형별로 제주유배가 나타나며 중앙의 지배권 약화로 인해 5기를 기점으로 대정현과 정의현에 유배되는 유배인수가 급감하게 되고 제주목으로 유배인이 집중하게 된다. 6기는 고종 18년(1881) 이후 조선에 외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국과 반란을 일으킨 인물들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표 2〉 시기·지역별 유배인 현황

시 기	구 분	지역별 유배인수(명)					총 합 (명)	비 고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추자도	미확인		
1기	태조 원년~예종 1년 ( 1392 ~ 1469 )	1	-	1	-	8	10	조선개국과 왕권강화
2기	성종 즉위년~선조 41년 ( 1469 ~ 1608 )	1	3	-	-	14	18	사림의 중앙진출과 훈구와의 대립
3기	광해군 즉위년~경종 4년 ( 1608 ~ 1724 )	11	21	21	1	19	73	광해군이후 봉당정치의 시작·정치적대립
4기	영조 즉위년~정조 24년 ( 1724 ~ 1800 )	13	34	13	17	9	86	정조 즉위관련과 영·정조의 탕평정치
5기	순조 즉위년~고종 17년 ( 1800 ~ 1880 )	17	2	3	16	-	38	세도정치 등장과 조선말 사회혼란
6기	고종 18년~순종 2년 ( 1881 ~ 1909 )	26	-	-	9	1	36	외세 침입의 본격화와 장단법(長短法)의 실행
총합		69	60	38	43	51	261	-

(자료: 『조선왕조실록』, 유배인의 자세한 내용은 본고 63쪽 〈부록2〉 시기별 제주유배인 목록 참조. 유배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로 표시함.)





〈그림 1〉 시기·지역별 제주유배인 분포, 〈표 2〉 참조 작성.

〈그림 1〉에 따르면 유배지의 경우 시기마다 유배인수가 집중되지만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1·2기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유배인수가 적은 점과 유배지에 대한 정확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주유배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3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나면서 1·2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3기는 대정현과 정의현에 유배인이 분산되고 제주목 역시 일정수의 유배인이 유배된다. 제주도내 유배인 분포는 고려 말부터 조선조 중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각지에 고루 분포되었던 것이 5기로 넘어서면서부터 대정·정의현은 유배인이 제한되고 주로 제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up>53)</sup> 대정현은 현종 6년(1840) 김정희의 유배를, 정의현은 현종 14년(1848) 이승헌을 마지막으로 유배인이 이 지역으로 유배되지 않는데 그 원인은 지배력 약화로 판단된다.

대정현과 정의현에 유배인이 감소·사라지는 건 정조 이후 즉 5기가 기점이다.

53) 고창석,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 1986, 63쪽.

이시기는 세도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조선은 사회혼란과 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배력 약화로 이어졌고 제주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양제해 모변이 발생되기 전 제주사회는 찰리사(察里使) 이재수의 지적처럼 이미 내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sup>54)</sup> 수령과 관료에 의한 부정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었고 수취제도의 문란은 도민의 생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었다.<sup>55)</sup> 영조 39년(1763) 대정현에 유배된 심내복이 조영득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한 것을 시작으로 순조 13년(1813) 양제해의 모변사건, 철종 11년(1860) 강제검의 난, 고종 35년(1898) 방성철의 난, 고종 38년(1901) 이재수의 난 등 여러 민란들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데, 19세기 이후에 민란들이 집중되어 발생하면서 지배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란 세력들에 의해 유배인이 희생되거나 민란세력에 유배인이 합류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방성철의 난의 경우 유배인 김낙영과 최형순을 끌어들이어 지도부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처음에는 협력하다 나중에 관군에 협력하여 난을 진압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유배인이 직·간접적으로 민란에 관련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제주목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유배는 용이하지 않았고 실제로 양제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3명의 유배인만 대정현과 정의현으로 유배되었다. 19세기 이후 사회 상황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란들을 살펴보면 제주목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배가 사라지는 이유는 19세기 조선전체에 만연된 사회 혼란과 함께 대정현과 정의현의 지배력 약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제주 삼읍과 함께 추자도 역시 제주유배로 설정하였다. 추자도의 유배인 수를 살펴보았을 때 총 43명으로 정의현의 유배인 수와 비슷하다. 유배인의 수가 평균적으로 일정한 점과 직접적인 지명을 언급하는 점으로 보아 추자도와 대정현, 정의현 모두 제주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각 개별적인 유배지역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추자도를 제주도나 전라도 유배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배지역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판

54) 『순조실록』 17권 14년 윤2월 14일 병자조. 「今此構亂之變 實緣虐民之弊 而官吏之作褻成黨 終成亂本 官長則自當按廉黜陟 而校吏之取無良尤作備之類 大行查發 洞革弊源之意 請並行會於察理使處 允之」.

55) 권인혁, 「19세기초 양제해의 모변 실태와 그 성격」 『탐라문화』 제7호, 1987, 128~136쪽.

단된다. 이는 김정희의 경우와 조정철을 비롯한 제주도내에서 이배되는 4명의 유배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대정현 내에서만 이배된 김정희의 경우에는 개인의 서신과 문집 등에서만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될 뿐, 『조선왕조실록』 기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도내 지역으로 이배된 조정철 등 3인의 경우에는 이배 사유까지 자세히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살펴보았을 때 제주도의 삼읍을 하나의 유배지로 파악하기 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고 추자도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유배지역이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과 고종 18년(1881)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추자도가 제주도로 이속된 점, 현재까지 연구된 제주유배 논문이 추자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추자도가 제주도에 속해있는 점으로 볼 때 제주유배의 범위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추자도를 제주도 유배 지역이라고 규정지어야 하고 전라도 영암군 시기의 추자도 유배인 역시 제주유배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1) 1기: 태조 원년(1392) ~ 예종 1년(1469. 11)

1기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조선건국을 반대하거나 왕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유배된 김만희와 한천, 이미는 유배가 풀린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김해김씨, 청주한씨, 경주이씨 입도조로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2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즉위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처남인 민무구·민무질 형제를 제주로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그리고 이시기에 신덕왕후의 사촌오빠인 강영이 제주도로 입도하게 되는데 제주도로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배인 신분으로의 입도와 유배가 아닌 피신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증보탐라지』, 『제주도 유인전』과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에서는 태종 2년(1402) 제주목 함덕으로 유배되었다고 하지만 『탐라명감』, 『제주선현지』에서는 유배가 아닌 피신 왔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에서는 강영의 유배와 관련된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척이란 신분과 고려 말 대표적인 무신이었던 강영에 대한 유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탓에 왕들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개국공신과 외척들을 유배 보냄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1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은 수만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제주도는 원나라의 잔존세력의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었고 태종 16년(1416)에 이르러서야 제주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의 건의<sup>56)</sup>에 의해 제주의 행정구역이 삼읍으로 개편될 정도로 중앙의 지배력이 약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즉 제주도가 조선의 영토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배인을 제주도로 보내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약 70여 년 동안 9명만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 2) 2기: 성종 즉위년(1469. 11) ~ 선조 41년(1608. 1)

2기는 사림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기존 세력인 훈구와 신진세력인 사림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후 계속된 훈구의 권력화는 정치·경제·사회적 모순과 비리가 고조되었고 성종시기에 이르러 향촌에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던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파와 대립되는 사림파를 형성하였다.<sup>57)</sup> 그러나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 후 네 번에 걸쳐 일어난 사화로 인해 세력이 약화·축소되는 과정에서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연산군 4년(1498) 김일손이 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이극돈이 자신의 비행을 사초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것이 발단이 된 무오사화는 김종직이 부관참시 되고 그의 문인들 대부분이 형을 받는다. 홍유손은 제주도로 유배되어<sup>58)</sup> 중종반정 이후 석방되었고, 이원은 무오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

56) 『태종실록』 31권 16년 5월 6일 정유조, 「濟州都安撫使吳湜 前判官張合等上其土事宜 啓曰 願自今本邑則屬以東道新村縣咸德縣金寧縣 西道貴日縣高內縣匡月縣郭文縣歸德縣明月縣 東道縣監以旌義縣爲本邑 屬以兔山縣 狐兒縣 洪爐縣等三縣 西道縣監以大靜縣爲本邑 屬以猓來縣 遮歸縣等二縣」.

5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8, 탐구당, 2003, 182쪽.

58) 『연산군일기』 31권 4년 9월 16일 신해조, 「克均等更啓 裕穉孱弱之徒 若屏諸北道 則以投野人 請流濟州爲奴 [...] 傳曰 可」.

때 사사되었다. 무오사화가 발생하고 6년이 지난 연산군 10년(1504) 4월에 일어난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생모 윤씨가 폐비·사사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사사되거나 유배되는데 갑자사화로 인해 홍상과 유헌, 김양보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중종 14년(1519) 조광조 등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림이 훈구를 억제하기 위해 위훈삭제운동을 하자 훈구가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으로 반격하면서 사림세력이 축출된 기묘사화는 중종이 훈구에 의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림의 도학정치에 실증을 느끼게 되어 훈구에 힘을 주면서 사림세력은 다시 축소된다. 김정과 이세번이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sup>59)</sup> 정은 유배 중 사사되었고 이세번은 유배 중 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을사사화는 명종 원년(1545) 대운과 소운 사이의 권력다툼에 사림이 희생되었다. 명종 3년(1548) 2월에 을사사화 당시 사관이었던 안명세가 이기의 죄상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무정보감(武定寶鑑)』 편찬 준비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또 한 차례의 타격이 잔존 사림에 가해졌다. 그 뒤 명종 4년(1549) 4월에는 이약빙의 아들 이흥운이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화가 연쇄적으로 확대되면서 유희춘이 양재역벽서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로 유배되었다.<sup>60)</sup>

2기는 대부분 사화와 관련하여 유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배인 18명 중 14명이 사화 또는 연산군과 관련되어 유배되었다. 또한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 유배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앙정치로 부터 추방·격리하는 유형의 본질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 3) 3기: 광해군 즉위년(1608. 2) ~ 경종 4년(1724. 8)

3기부터 제주유배인이 급증하는데 3기는 봉당정치로 변화하는 시기로 유배인 73명 중 57명이 봉당정치와 관련하여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왕권강화, 그리고 봉당정치와 환국으로 인한 정치세력의 변화로 축약할 수 있다.

59) 『중종실록』 40권 15년 7월 15일 신축조. 「傳于政廳曰 濟州牧使 乃統治三邑 而黜陟之實 有監司之任 李世蕃其能堪任乎 雖在堂下之列 文武才全者 擇而注擬可也」.

60) 『명종실록』 6권 2년 윤9월 4일 임오조. 「又啓曰 柳希春詳聞尹任等事 而合司之日 佯爲不知 不從長官之議 幾失事機 故絕島安置矣 但濟州去家鄉不遠 至爲未便 請移于極邊 [...] 答曰 柳希春 權機 權應昌等事 已定久矣 不須改之」.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정권을 잡은 대북파는 자신들의 세력을 안정시키고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김직재 옥사와 계축옥사를 일으키는데 김직재 옥사와 관련하여 왕으로 추대되었던 이태경<sup>61)</sup>과 송상인<sup>62)</sup>, 신희업<sup>63)</sup>이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계축옥사와 관련해서는 김제남부인 노씨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sup>64)</sup> 또한 인목대비의 폐비반대를 이유로 조직과 이익이, 영창대군 처형을 비판한 정은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sup>65)</sup> 그러나 광해군 재위기간 동안 일어난 두 차례의 옥사로 인해 대북파는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히 할 수 있었지만 훗날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 인조가 즉위한 이후 대북파는 조선 정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 재위 중에도 반란과 붕당정치는 계속 반복되었다. 선조의 7남인 인성군은 인조 6년(1628) 일어난 이괄의 난에 적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사되고 인성군의 가족 5명은 정의현으로 유배되었으며<sup>66)</sup> 인조 15년(1637)에는 광해군이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이배되어 인조 19년(1641)까지 제주목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sup>67)</sup> 그리고 인조 22년(1644) 심기원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이유로 대정현으로 유배된 이덕인은 3개월 만에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으며,<sup>68)</sup>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의 아들 석철, 석린, 석견 3형제가 인조의 음식에 독을 탔다는 무고로 사사되는 강빈사건에 연좌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sup>69)</sup> 그 중 석철과 석린은 제주유배 중 병으로 사망하였고 막내 석견은 남해로 이배되었다. 광해군과 인조 시기는 반란과 관련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제주도로 유배가 집중되었다. 광해군과 인조 재위기간 동안 유배된 29명 중 19명이 반란과 관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왕족의 제주유배가 나타난다.

이후 숙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전과는 달리 환국에 따른 정치세력의 변동에

- 61) 『광해군일기』 57권 4년 9월 3일 갑오조. 「傳曰 泰慶三出賊招 豈無所以 邦刑至嚴 非予所得私 而亦莫非否德忝位之致 不忍繩之以律 特減其死 絕島圍籬安置 以施輕典」.
- 62) 『광해군일기』 52권 4년 4월 25일 기축조. 「傳曰 宋象仁 申景湘乃逆魁切親也 圍籬安置」.
- 63) 『광해군일기』 52권 4년 4월 29일 계사조. 「傳曰 辛喜業 濟州改定配」.
- 64) 『광해군일기』 133권 10년 10월 15일 경오조. 「配金悌男妻盧氏于濟州」.
- 65) 『광해군일기』 80권 6년 7월 4일 갑인조. 「特命 配鄭縊于定配單子 傳曰 大靜改定」.
- 66) 『인조실록』 18권 6년 5월 27일 정해조. 「上下教曰 珙妻子 今將入濟州 其令牧使 另加護恤」.
- 67) 『인조실록』 42년 19년 7월 10일 갑신조. 「光海君以是月初一日乙亥 卒于濟州園內 年六十七」.
- 68) 『인조실록』 45권 22년 4월 24일 신사조. 「安置德仁於大靜縣」. 동왕 동년 7월 29일 갑인조. 「遣義禁府都事 賜德仁死于濟州」.
- 69) 『인조실록』 48권 25년 5월 13일 계축조. 「配昭顯世子三子石鐵 石麟 石堅于濟州 初 禁府請以石鐵配濟州 石麟配旌義 石堅配大靜 石鐵時年十二 石麟八歲 石堅四歲」.

의해 제주유배가 나타난다. 숙종 6년(1680) 일어나는 경신환국으로 유혁연이 제주도로 유배된 후 사사된 것을<sup>70)</sup> 시작으로, 숙종 15년(1689) 후계자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입지를 강화하려는 숙종과 이를 반대하는 서인 사이의 대립에서 숙종의 의지에 따라 남인으로 주도세력이 변화하는 기사환국으로 인해 서인의 당수였던 송시열을 비롯하여 김예보, 김진구 등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송시열은 방환 중 사사되었으나<sup>71)</sup> 김진구는 제주도에 후학을 가르치면서 제주도의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사환국 이후 정권을 잡은 남인이 독단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숙종이 전격적으로 비망기를 내림으로써 다시 서인으로 주도세력이 변화하는데 숙종 20년(1694)에 일어난 갑술환국으로 인해 우의정인 민암과 김덕원, 장희재가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중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는 유배지에서 장희빈 복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서울로 이송 후 공개주살되었다.<sup>72)</sup>

3기 초기에는 왕권과 관련된 유배가 대부분인 반면 후기에는 왕과 집권세력의 변화로 인해 유배가 집중되었다. 또한 본격적으로 중앙 관료를 역임했던 인물들이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유학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 3기를 기점으로 제주 유배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조선정치에 정착하면서 나타난 정치세력 간의 대립과 함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인해 중국과 인접한 지역의 치안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제주도와 전라도 일대의 섬으로 유배인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 4) 4기: 영조 즉위년(1724. 8) ~ 정조 24년(1800. 7)

4기는 왕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유배인이 집중된 시기로 영·정조의 즉위 관련

70) 『숙종실록』 10권 6년 9월 5일 경신조. 「賜柳赫然死」.

71) 『숙종실록』 21권 15년 6월 3일 무진조. 「人心詿誤 爭投疏救時烈 今聞候于道者不絕 氣象可畏也 右尹陸昌明曰 臣在臺閣 因請鞫問 而議者皆非之 直賜處分 乃得宜耳 上曰大臣言如此 斟酌賜死 禁府都事之去 隨所遇舉行 時宋時烈自濟州被拿還渡海 聞中宮既廢 吳斗寅朴泰輔諫死 遂不食 至井邑縣 受賜死之旨 乃草遺疏二本 付其孫疇錫 以待他日進之 又書訓戒之辭 以遺諸子孫 子基泰曰 國家用刑 忌茲日 宜遵之 時烈不聽曰 吾病甚 恐不能須臾 受命不可緩也 遂從容就盡 時年八十三」.

72) 『숙종실록』 35권 27년 9월 23일 정미조. 「下備忘記曰 大行王妃遭疾二載 而禧嬪張氏 非但一不起居 不曰中宮殿而必稱閔氏 又曰 閔氏實妖人 不特此也 潛設神堂於就善堂之西 每與二三婢僕 屏人祈禱 極其縲繆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濟州梟棘罪人張希載 爲先亟正邦刑」.



과 탕평정치로의 전환으로 인해 제주유배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왕의 즉위를 반대하여 제주도로 유배된 경우는 영·정조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즉위반대 상소와 함께 정조 즉위 후에는 시해·반란을 기도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경종의 건강이 좋지 않아 후사가 없어 왕제인 연잉군(영조)이 세자로 책봉되는데 있어 소론세력이 우의정 조태구(趙泰耆)를 필두로 시기상조론을 펴 반대했으나 노론의 뜻대로 책봉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후 노론이 대리침정으로까지 몰아가자 경종 2년(1722)에 소론은 기세를 모아 영수 김일경 등이 남인 목호룡 등을 시켜 노론이 삼수역(三守逆: 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3가지 방법)까지 꾸며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 고 주장하여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 명을 처형, 170여 명을 유배 또는 치죄하였다. 왕세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여 왕세제가 김대비에게 사위(辭位)도 불사하겠다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경종이 갑자기 승하하여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신임옥사와 관련된 소론의 윤지와 이현장, 김요경, 서종하, 이진유<sup>73)</sup>가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영조 31년(1755) 목호룡이 아들인 목덕복과 목덕성, 김윤희이 신임옥사와 관련하여 낙안군 등지에서 제주도로 이배(移配)되었다.<sup>74)</sup>

아버지 사도세자가 붕당정치로 희생되었듯이 정조 역시 세손 시절부터 즉위할 때까지 항상 위협이 있었고 즉위한 이후에도 반란기도와 시해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등 왕위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정조 즉위년(1776) 홍찬해와 홍지해가 반역사건에 연루되어 정의현과 추자도로 유배된 다음해인 정조 1년(1777)에 사사되었고<sup>75)</sup> 조완 역시 같은 이유로 제주목에 유배되었고 철종의 조부인 은언군의 아들인 완풍군의 역모사건과 관련하여 김우진<sup>76)</sup>과 조시위<sup>77)</sup>가 대정현과 제주목으로 유배되었다.

선조 이후 붕당정치가 조선정치에 반영되면서 그 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73) 『영조실록』 5권 1년 4월 18일 을유조. 「權詹削黜，顯章配濟州」, 동왕 6권 1년 6월 25일 신묘조. 「李眞儉康津縣 尹志大靜縣 絕島安置」, 동왕 7권 1년 9월 20일 갑인조. 「匡輔竄陽德 堯鏡竄大靜」, 동왕 24권 5년 9월 28일 기해조. 「命移配李眞儒 尹聖時 徐宗厦于絕島」.

74) 『영조실록』 83권 31년 2월 29일 계유조 「左議政金尙魯奏曰 虎龍兩子 尙今容息於湖南陸地 誠是失刑之大者 請樂安郡爲奴罪人德福移配旌義縣 寶城郡爲奴罪人德成移配大靜縣 上從之」, 동왕 83권 31년 3월 1일 갑술조. 「左議政金尙魯啓 固城縣爲奴罪人允興 卽一鏡之子也 不可使之容息於陸地 請移配濟州牧 從之」.

75) 『정조실록』 2권 즉위년 8월 28일 정묘조. 「移配黑山島竄配罪人纘海于旌義縣 以致顯之同配一邑也」.

76) 『정조실록』 22권 10년 12월 10일 기유조. 「罪人金字鎮 濟州牧大靜縣圍籬安置」.

77) 『정조실록』 27권 13년 5월 12일 무진조. 「移配趙時偉于濟州牧 加棘」.

욱 심해졌다. 그래서 영조는 붕당정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노론·소론 쌍방의 인재에게 관직을 배분하는 등 탕평정치를 실시하였고 정조 역시 영조의 탕평정치를 계승하면서 붕당정치가 가지는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주자의 성리학이 조선의 정치이념으로 뿌리 깊어진 상황에서 탕평정치로의 변화는 기존의 세력과 대립으로 이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영조 3년(1727) 임징하의 유배를 시작으로 윤봉조, 조관빈, 임명주, 이준중, 유언호 등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sup>78)</sup>

4기 영조·정조 재위기간이라는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즉위 문제와 붕당정치에서 탕평정치로의 정치변화로 인한 왕과 관료들의 대립으로 가장 많은 86명의 유배인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4기를 기점으로 하여 추자도의 유배인 수가 급증하면서 추자도가 제주유배의 중간 기착지가 아닌 유배지로써 특징이 확인되었다.

#### 5) 5기: 순조 즉위년(1800. 7) ~ 고종 17년(1880)

영·정조의 탕평정치가 사라지고 세도정치가 등장하면서 제주유배의 특징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조선 말 사회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제주유배가 나타나는데 일정한 현상 없이 제주유배가 나타나는 것이 5기의 특징으로 혼란스러운 조선의 시대상황이 제주유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천주교에 관대하였던 정조가 죽고 집권한 노론 벽파는 순조 즉위년(1800) 천주교 탄압을 병자하여 신유사옥을 일으켜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천주교도 약 100명이 사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황사영이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북경의 주교에게 청원서를 보내다가 발각되면서 황사영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사사되거나 유배되었다. 홍낙임<sup>79)</sup>과 이치훈<sup>80)</sup>은 신유사옥과 관련되어서 제주목으로 유배되었고 황사영백서사건에 연좌되어 그의 부인인 정난주가 대정현으로 유배되었다. 순조가 어린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김조순이 순조를 보필하면서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는데 그

78) 본고 68쪽, <부록2> IV. 4기 유배인 목록 참조.

79) 『순조실록』 2권 1년 4월 28일 갑술조. 「請濟州牧圍籬安置罪人樂任」.

80) 『순조실록』 3권 1년 11월 5일 무인조. 「配致薰于濟州牧」.

뒤 현종시기에는 현종 어머니 집안인 풍양조씨가, 철종시기에는 다시 안동김씨로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가 계속 되었다. 그러나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흥선대원군에 집권하게 되면서 왕실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지만 명성황후에 의해 실각한 후 조선말까지 민씨 일족에 의한 세도정치가 지속되었다. 조선후기 계속되는 세도정치로 인해 중앙관료와 지방관료가 부패하면서 삼정의 문란과 관료들의 가혹한 탄압·착취가 지속되었고 이에 양반 출신 농민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민란이 일어나는 등 민란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제주 유배인의 사례로 살펴보면 현종 14년(1848) 유배된 박희영은 아편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를 밀수입하다가 발각되어 추자도로 유배되었고<sup>81)</sup> 심이택은 정부미를 부정 유용하여 제주목으로 유배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생들의 부정 또한 확인되는데 구성희<sup>82)</sup>, 이희당<sup>83)</sup>, 남정호, 박영훈, 민영서<sup>84)</sup> 등 5명이 출신지를 속여 과거 시험을 치른 것이 확인되어 모두 제주목으로 유배되었다.

#### 6) 6기: 고종 18년(1881) ~ 순종 2년(1909. 7. 12)

6기는 조선말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6기 유배인 대부분이 친외(일본, 러시아)와 반란 등의 사유로 제주도로 유배되는데 이전의 유배가 형벌이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한 유배였다면 이 시기의 유배는 국내·외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고종 32년(1895) 11월 29일 친일파가 계속 정권을 장악하자 시종원경 이재순과, 중추원의관 안경수 등이 친러적인 정동파의 이범진, 이윤용, 이완용, 윤웅렬, 윤치호 등과 밀모하고 언더우드·다이·헐버트 등의 미국인의 협조도 얻어 무장한 친위대가 궁성에 쳐들어가 국왕을 친일파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춘생문사건이

81) 『현종실록』 15권 14년 5월 9일 신사조. 「命秋曹囚朴禧英 減死爲奴于楸子島 禧英 象譯流也 鴉兒烟取吸器具 被捉於灣府 而用律無可據 有是命」.

82) 『고종실록』 1권 1년 5월 14일 계축조. 「教曰 濟州擧子 駕海遠赴 勞苦可悶 使之頭書邑名 特出軫念 而乃有此僞冒圖占之弊 使本州儒生 竟抱漏榜之歎 豈非可痛乎 具星喜原榜目拔去後 濟州充軍 以謝一境人士之心」.

83) 『고종실록』 16권 16년 3월 13일 정사조. 「教曰 向日庭試 使之頭書濟州 特出於軫念遠人 而乃有此僞冒欺罔 使原籍之士 抱茲漏榜之歎 究厥所爲 豈非可痛乎 李禧鸞 原榜目拔去 濟州牧充軍」.

84) 『고종실록』 16권 16년 3월 25일 기사조. 「教曰 今見臺疏 其僞冒之習 誠極痛駭 士子通籍 欲其事君也 而先行欺君 可乎 不可尋常置之 庭試被選人南廷皓 朴泳薰 閔泳序 竝原榜目拔去 濟州牧充軍」.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국왕 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서 대대적인 일본의 세력 만회와 왕비시해 사건의 무마용으로 활용하였다. 시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죄방면도 이 사건을 빌미로 정당화하고 있고 친일 김홍집내각을 연명시키는 역할도 하였다.<sup>85)</sup> 춘생문사건과 관련하여 이민평, 이충구, 전우기, 노홍규 등이 종신유형을 받고 제주목으로 유배되었다. 고종 33년(1896) 2월 12일에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있는 후 친일세력은 소탕되는데 친일행적으로 인해 서주보, 정병조, 김경하, 이범주, 이태황, 홍우덕 등이 제주목과 추자도로 유배되었다.<sup>86)</sup> 6기 이전시기까지는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난 반면 6기는 일본과 러시아라는 다른 국가와 관련하여 조선 내부세력과 외국세력에 협력하는 세력의 대립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외세의 침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조선내부에선 고종 33년(1896) 7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국민평등권과 더불어 국민자유권론을 제기하는 등 서구시민사회의 근대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사상의 도입과 함께 독립협회가 정부 수뇌부와 갈등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한다”고 무고함으로써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체포된다. 이 인원 중 이원공과 여규형, 지식영, 안기중이 제주도로 유배되는데 10년 유형을 집행 받지만 3개월만 유배되었다.

6기에 이르러 유형에 형량을 집행하여 유배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유형이 무기형인 반면 이후 형량이 정해지는 형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형벌제도는 조선조 500년 동안 원근법에 의해 운용돼 왔으나 고종 32년(1895) 갑오경장(甲午更張)에 따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형기제로 바꾸어 장단법(長短法)이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10년, 15년, 종신의 등급이 3등급이었으나 고종 33년(1896)에는 1년에서 종신까지의 10등급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유형제도는 순종 2년(1909)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고 금고형(禁錮刑)으로 대신하게 되었다.<sup>87)</sup>

8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2, 탐구당, 2003, 42~43쪽.

86) 『고종실록』 34권 33년 4월 18일(양력). 「詔曰 朕이 開國五百四年八月二十日逆變과 同年十月誣獄에 關한 諸囚의 供案을 查閱하고 該案件에 對하여 大懲創을 行코져 하였더니 斟量함이 不無하기로 好生하는 意를 特推하여 法部를 命하여 現囚徐周輔 鄭丙朝 金經夏 李台璜은 流終身에 處하고 鄭萬朝 禹洛善은 流十五年에 處하고 全峻基 李範疇는 流十年에 處하고 洪祐德은 役一年에 處하고 鄭寅興은 放免하여 各其自新을 路를 開케 하라」, 「法部 依詔勅宣告後 定配所 徐周輔 鄭丙朝 金經夏 李台璜 李範疇 濟州郡 鄭萬朝 金甲島 禹洛善 白翎島 全峻基 黑山島 洪祐德監禁處所 楸子島 上奏」.

87) 홍순만, 「조선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 『제주도연구』 3, 제주도연구회, 1986, 63쪽.



## 2. 신분·계층별 실태분석

제주유배인은 261명이라는 많은 수가 존재한 만큼 유배인의 신분 또한 다양하였다. 광혜군을 비롯한 왕족과 외척, 관료, 유생, 환관,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제주도로 유배되었지만<sup>88)</sup> 주로 관료출신 죄인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왕족과 외척 역시 일정한 수가 유배되면서 제주도는 조선사회에 중심세력이 주로 유배되는 최악의 유배지로 해석할 수 있다.

### 1) 왕족·외척

왕족과 외척을 하나로 설정하는 이유는 왕족들과 외척이 비슷한 사유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되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관료로 분류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외척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외척 역시 왕족·외척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된다. 28명의 왕족·외척 중 17명이 왕족이고 11명은 외척 혹은 왕족의 부인인데 그 중 왕족의 제주유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표 3> 왕족 유배인

유배인	연도	신분	사유	기간	장소	비고
이태경	광혜군4년 (1612)	진릉군	김직재육사에 왕으로추대	1612.9.3 ~1612.11.1	미상	위리안치, 사사.
이길	인조6년 (1628)	인성군 아들	인성군 모반 죄에 연좌	1628.5.27 ~1635.8.15	정의현	생활지원, 울진으로 이배.
이억	인조6년 (1628)	인성군 아들	인성군 모반 죄에 연좌	1628.5.27 ~1635.8.15	정의현	생활지원, 울진으로 이배.
이건	인조6년 (1628)	인성군 아들	인성군 모반 죄에 연좌	1628.5.27 ~1635.8.15	정의현	생활지원, 울진으로 이배, 제주풍토기거술.

88) 제주도로 유배된 261명을 신분·계층별로 분류하면 왕족·외척이 27명, 관료가 141명, 관료가족이 11명, 유생이 21명 신분을 알수 없는 유배인이 42명, 기타로 19명이 있다.

인성군 딸	인조6년 (1628)	인성군 딸	인성군 모반죄에 연좌	1628.5.27 ~ 1635.8.15	정의현	생활지원, 울진으로 이배.
광해군	인조15년 (1637)	왕	좌상한죄	1637.6.6 ~ 1641.7.1	제주목	존극안치, 유배중 사망.
이덕인	인조22년 (1644)	회은군	심기원에 의해 왕으로 추대	1644.4.24 ~ 1644.7.29	대정현	안치, 유배중사사, 아들이팽향은 전주이씨계성군입도조.
이석철	인조25년 (1647)	소현세 자아들	강빈사건관련	1647.8.1 ~ 1648.3.4	미상	유배중 사망.
이석린	인조25년 (1647)	소현세 자아들	강빈사건관련	1647.8.1 ~ 1648.12.23	미상	유배중 사망.
이석견	인조25년 (1647)	소현세 자아들	강빈사건관련	1647.8.1 ~ 1649.3.17	미상	효종때 사면.
임창군	숙종5년 (1679)	이석견 아들	왕으로 추대하려한다는 무고	1679.3.19 ~ 1682.6.1	제주목	가족동행, 해남으로이배.
임해군	숙종5년 (1679)	이석견 아들	임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한다는 무고	1679.3.19 ~ 1682.6.1	정의현	가족동행, 해남으로이배.
이증	영조25년 (1749)	영조와 8촌	투서가 정치문제화	1749.10.8 ~ 1752.6.17	제주목	유배지에서 사망.
은연군	영조47년 (1771)	정조의 이복동생	왕의학대	1771. ~ 1773.5.12	대정현	입도날짜 확인불가.
은신군	영조47년 (1771)	정조의 이복동생	왕의학대	1771. ~ 1771.4.12	대정현	입도날짜확인불가, 적거중사망.
이하전	철종13년 (1862)	왕족 (왕위계 승후보자)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무고	1862.7.25 ~ 1862.8.11	제주목	안치, 유배중 사사.
이재선	고종18년 (1881)	고종의 형	반란사건에 왕으로 추대	1881.10.26 ~ 1881	제주목	안치, 유배중 사사.

(자료: 『조선왕조실록』, 『한국인명사전』 참조.)

제주유배인 중 사사된 왕족은 4명으로 모두 반란세력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인물이다.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보다 안정시켜야 했고 집권세력들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끊임없이 반란사건이 이야기되었고 사건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반란사건에 왕으로 추대된 경우 대부분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의

제주유배는 사형을 감형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여론과 민심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태경과 이덕인이 반란사건과 연관된 시기는 봉당정치의 폐해가 가장 심한 시기였고 광해군과 인조 재위기간 모두 왕위계승 문제가 가장 극렬했던 시기였다. 이하전의 경우 순조 때부터 계속해서 왕위 후보자로 계속 이야기 되는 인물이었으며 이재선은 고종의 친형으로써 그의 반란은 고종에게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즉 정치적인 현실 문제와 사사되는 왕족 유배인의 신분적 특징으로 인해 서울에서 사형을 집행하기 보다는 외부와 단절된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 뒤, 짧은 기간 안에 사사시킴으로써 왕과 그의 지지 세력들은 반란사건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했고 이로 인해 제주유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사되는 왕족과는 달리 다른 왕족들은 다른 신분층에 비해 보다 나은 유배생활을 하는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가) 임금이 하교하였다. “이공(李珙)의 처자가 지금 제주로 들어갈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각별히 구휼하게 하라.”<sup>89)</sup>

(나) 임금이 하교하였다. “이석철 등이 갈 때에 역마를 번갈아 제공하여 넘어지는 걱정이 없도록 하라.”<sup>90)</sup>

(다) 소대(召對)가 끝나려고 할 때 임금이 승지를 불러 전교하기를, “훈(焜)과 엽(焜)은 그 어미와 아내를 함께 가도록 하라.” 하였다.<sup>91)</sup>

(라) 임금이 말하기를, “증(增)이 섬에 귀양 가는 것은 내 마음에 창감(愴感)하여 안율(按律)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으니, 경들도 또한 안율하는 것으로써 아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어 증을 제주(濟州)에 안치할 것을 명하고 그가 경과하는 고을로 하여금 약물(藥物)을 도와주게 하였으며 섬에 도착한 뒤에도 의식과 약이(藥餌)를 주게 하였다.<sup>92)</sup>

89) 『인조실록』 18권 6년 5월 27일 정해조. 「上下教曰 珙妻子 今將入濟州 其令牧使 另加護恤」.

90) 『인조실록』 48권 25년 5월 15일 을묘조. 「上下教曰 石鐵等之行 替給驛馬 俾免顛仆之患」.

91) 『숙종실록』 8권 5년 3월 18일 계축조. 「將罷對 上招承旨教曰 焜 焜母與妻 並令偕送」.

92) 『영조실록』 70권 25년 10월 8일 계미조. 「上曰 增之島配 予心愴感 無異按律 卿等亦以按律 知之可也 仍命安置增于濟州 令所經邑 助給藥物 到島後給衣食 藥餌 增家舊奉仁嬪祀 命其弟星攝事學 時名在臺達 命罷職 雲達又請嚴問崇 晳 採其根因 命崇設鞫 燿拿鞫 初崇之待罪也 其親交有慰問於路次者 趙載浩以此陳於上前 至是憲臣請窮治其人 命勿限年定配 卽李魯 趙榮益也」.

(마) 은신군(恩信君) 이진(李禎)이 제주의 귀양간 곳에서 졸(卒)하였다.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하교하기를, “아! 이번의 처분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지금까지 차마 못할 일이라고 여겼었다. 본주(本州)의 계본(啓本)이 어제 도착하였는데, 중관(中官)이 혹시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머뭇거리면서 머물러 두게 하였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알렸으니, 슬픈 마음을 어디다 비유하겠는가? 관재(棺材)는 본목(本牧)으로 하여금 가려서 지급하게 하고, 의금(衣衾)은 본현감으로 하여금 종신(宗臣)의 예(例)에 따라 살피고 단속하여 마음을 써서 거행하도록 하되, 우선 가시 울타리를 철거하게 하고 마음을 써서 운구(運柩)하도록 하라. 은언군(恩彦君) 이인(李隣)이 만약 함께 물고(物故)하였다면 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는가? 특별히 석방하는 일을 당일 안에 배도(倍道)하여 분부하도록 하라. 그리고 진의 처(妻)에게는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sup>93)</sup>

(가)는 인조 6년(1628) 유효립이 대북의 잔당을 규합하여 모반을 기도할 때 인성군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이유로 유배된 인성군 가족의 유배기사이고 (나)는 인조 25년(1647)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씨가 인조의 음식에 독약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된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된 기사이다. 그리고 (다)는 숙종 5년(1679) 임창군을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무고로 유배된 임창군과 임해군의 내용이고 (라)는 투서가 문제화되어 이증이 영조 25년(1749) 제주도로 유배되는 기사내용이며, (마)는 은신군 이진이 영조 47년(1771) 제주에서 사망하자 그의 장례와 관련한 기사내용이다.

광해군과 사사된 4명의 왕족을 제외한 12명의 인원은 5번에 걸쳐 각각 가족들이 함께 유배되었다. 그런데 (가)~(마)의 사례에서는 유배인에 대한 왕의 태도가 사사된 왕족과 대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가)의 인성군 가족과 (라)의 이증의 경우는 제주목사에게 구휼(救恤)할 것을 직접 명령하고 (나)에서는 소현세자의 3명의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역마를 교체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명하는 등 사소한 것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마)의 사례에서는 은신군 이진이 제주에서 사망하자 그에 대한 예우를 명하고 있다. (가)~(마)를 살펴볼 때

93) 『영조실록』 116권 47년 4월 12일 임오조. 「恩信君禎卒于濟州謫所 上聞之 下教曰 噫 今者處分 雖斷斷爲國 於心尙今不忍 本州啓本昨到 而中官恐或傷心 越趨留置 今日始聞 愴心曷喻 棺材令本牧擇給 衣衾使本縣監 依宗臣例看檢 着意舉行 爲先撤籬 着意運柩 禍若同故 予心若何 特放事 當日內倍道分付 禎妻令該廳 施恤典」.

제주도로 유배된 왕족들에 대한 처우가 그 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유배가 확정되고 유배지로 가는 노정에서부터 유배생활, 사후에 이르기 까지 왕은 왕족 유배인을 배려하면서 다른 신분의 유배인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 2) 관료

관료의 경우 제주유배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4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품계가 확인된 인물은 총 86명으로 정1품인 좌의정을 지낸 송시열을 비롯하여 정7품 주서 관직에 있던 홍재민에 이르기까지 고위관료에서부터 하위관료까지 다양한 품계를 가진 관료들이 여러 사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제주도로 유배된 관료출신 유배인의 품계를 살펴보면 <표 4> 와 같다.

<표 4> 관료출신 제주유배인 품계

	부서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정7품	인원수
문관	의정부	좌·우의정각명													2
	6조			형조판서 1	이조참판 1	이조참의 1				정랑 3					6
	승정원					승지 3								주서 2	5
	의금부										도사 1				1
	사헌부				대사헌 3		집의 2	장령 1		지평 7					13
	사간원					대사간 4				헌납 4		정언 9			17
	홍문관			대제학 1						교리 2		수찬 1	부수찬 1		5
	춘추관				동지사 1										1
	세자시강원											사서 1			1

	중추부	영중추부사 (무관)	판중추부사 <sup>2</sup>						봉상첨정 1						4
	기타		도첨의좌정승 1												1
	외관				부윤 2 관찰사 5	목사 3 부사 4			군수 1				현감 2		17
무관	훈원				훈원대장 1										1
	5위								부호군 2	사직 1	부사 3		부사 과 2		8
	지방 군관			통제사 1	병사 2	전라 수사 1									4
문관		2	3	2	12	15	2	1	2	16	1	11	3	2	72
무관		1		1	3	1			2	1	3		2		14
총합		3	3	3	15	16	2	1	4	17	4	11	5	2	86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표 4> 와 같이 중2품과 정3품 그리고 정5품과 정6품의 관료들이 가장 많이 유배되는데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되지만 백낙신과 김시연은 진주민란의 책임으로, 심이택은 정부미를 부정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제주목으로 위리안치 되었다.<sup>94)</sup> 그리고 이희손은 왜구를 방비하지 못했다하여 제주로 충군으로 유배되었다. 제주도로 충군을 집행 받고 온 유배인은 총 8명인데 그 중 이희손만 유일하게 관료 출신이다.

유배는 사화나 환국 등 정책의 변화로 인해 주도세력이 바뀌는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유배가 정치적인 성격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유배인의 관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유배인 대부분이 왕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관직에 있거나 실무직에 있었던 인물

94) 『고종실록』 1권 1년 3월 4일 갑진조, 「沈履澤嚴刑一次 濟州牧圍籬安置 三倍道押送」.



로써 고위품계가 아닌 정 5품 이하 관료 39명 중 24명이 삼사의 관료이고 이외에 육조정량이 3명, 현감이 2명이었다. 즉 제주유배인 중 5품 이하 관료는 대부분 실무직이거나 왕과 직접 대면하는 관료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제주도는 고위직이거나 실무직에 있었던 관료들이 집중적으로 유배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제주유배는 그들의 직책과 영향력을 봤을 때 제주도가 최악의 유배지로 인식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언관을 담당하였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료들이 집중적으로 유배되는데 사림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도학정치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도학정치의 실현을 위해 군주 자신의 덕성과 자질 함양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그들은 도학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권의 담당자인 군주와 대신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언로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언로의 통색(通塞)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여겨 언로의 개방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였고, 군주 역시 언관의 언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관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때, 군주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며 도학정치의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언관은 탄핵활동도 중요하지만 기강을 확립하는 것과 같이 국가를 위한 원대한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었고 이는 그들이 언관의 활동이 단순히 탄핵이라는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보다 차원 높은 영역에까지 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sup>95)</sup> 이와 같은 사림의 주장은 선조이후 그들이 집권하면서 현실정치에 반영되었고 도학정치의 하나로 관료와 유생이 상소라는 언론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의 형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왕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죄를 모면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언관을 담당하였던 삼사의 경우 다른 아문(衙門) 보다 더 많은 관료들이 제주로 유배되었다.

### 3) 기타

왕족·외척, 관료 이외에도 종교인, 환관, 관료가족, 유생 등 다양한 신분이 제

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8, 탐구당, 2003, 184~186쪽.

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제주유배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 왕족·외척이거나 관료이기 때문에 다른 신분을 가진 유배인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개별적으로 제주 유배의 특징이 확인된다.

### (1) 종교인

〈표 5〉 종교관련 유배인

유배인	연도	신분	사유	기간	장소	비고
보우	명종20년 (1565)	승려	혹세무민	1565.6.25 ~1565	-	유배지에서사망.
환성 지안	영조5년 (1729)	승려	대법회를무구 (無構)해서	1729 ~	-	유배중사망.
혜암 유장	정조8년 (1784)	승려	전라관찰사에 무고당해	미상 ~1784	-	-
이치훈	순조1년 (1801)	이승훈 동생	신유사육	1801.11.5 ~미상	제주목	찬배.
정난주	순조1년 (1801)	황사영 처	황사영백서사 건연좌	1801.11.21 ~1838.2.1	대정현	유배중사망, 위노 최초로 제주도에 천주교소개.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승려는 3명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유배기간이나 유배지, 유배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유교를 중요시하는 풍조와 보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정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제주유배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다.

18세기 이후 조선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개종하거나 관련성을 띄는데 제주도로 유배된 인물들 중 천주교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인물은 이치훈, 정난주가 유일하다. 이치훈은 형인 이승훈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되었고<sup>96)</sup> 정난주는 황사영사건에 연좌되어 대정현으로 유배되었는데 이치훈의 경우 실제로 이치훈이 천주교 신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승훈의 아버지인 이동욱이 사후에 이승훈의 죄로 인해 관직이 추탈될 점을 봤을 때<sup>97)</sup> 만약 이치훈이 천주교신자였으면 이치훈 역시 사형에 처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이치훈은 신유사

96) 『순조실록』 3권 1년 11월 5일 무인조. 「配致薰于濟州牧」.

97) 『순조실록』 2권 1년 3월 3일 기묘조. 「李東郁 請施以追削之典」.



옥으로 제주도로 유배되지만 천주교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된다.

정난주의 아들 황경한의 경우, 정난주와 함께 제주도로 유배 되는 도중에 추자도에서 나졸들에게 허락을 받고 ‘죽어서 수장했다’고 조정에 보고하도록 한 후 추자도의 뱃사공 오씨가 키웠다고 한다.<sup>98)</sup> 황경한의 경우 유배인 신분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사망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배인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권일신의 경우가 있는데 정조 15년(1791) 서학서적을 간행하다 제주로 유배 명을 받은 권일신은 유배지로 이동하는 기간에 배교하여 예산으로 이배 명을 받게 되는데 유배되는 도중에 사망한다. 유형은 형이 집행되면 배소로 이동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통례이다. 그런데 권일신의 경우 제주목으로 유배를 명을 받았지만 오는 도중 예산으로 이배되었기 때문에 제주유배인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황경한 역시 정난주와 함께 대정현으로 유배명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배소로 이동되어 생활하지 않았고 사망한 인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제주유배인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 (2) 여성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사회에서 여성이 제주도로 유배된 경우는 7명으로 모두 가족의 죄에 연좌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제주도로 유배된 여성을 살펴보면 왕족으로는 인성군 딸과 인성군부인 윤씨가 있고 김제남부인 노씨와 문성국의 모는 외척이다. 그리고 조재욱의 부인과 딸, 정난주 등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의 죄에 연좌되어 제주도로 유배되는데 조재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이나 부친이 모두 사형되어 유배된 여성들을 복귀시켜줄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성 유배인들보다 유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실제로 유배기간이 가장 짧은 김제남부인 노씨가 약 6년 동안 제주도에 유배되었으며 인성군의 처와 딸의 경우에는 8년 동안 유배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소개한 정난주는 사망할 때까지 약 38년 동안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98)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빅벨, 2001, 42~49쪽.

〈표 6〉 여성유배인

유배인	연도	신분	사유	기간	장소	비고
김제남부인 노씨	광해군10년 (1618)	인목왕 후모친	인목대비 폐비	1618.10.15 ~1623.3.14	제주목	목사 양호가 반대파의 사람이라서 학대하고 역에 종사하게 함. 모주를 처음만들었다는 설화가 있음.
인성군부인 윤씨	인조6년 (1628)	선조의 7남처	인성군죄에 연좌	1628.5.27 ~1635.8.15	정의현	유효립 모반때 인성군이 왕으로 추대, 울진으로 이배됨.
인성군딸	인조6년 (1628)	선조 손녀	인성군죄에 연좌	1628.5.27 ~1635.8.15	정의현	유효립 모반때 인성군이 왕으로 추대, 울진으로 이배됨.
문성국모	정조즉위년 (1776)	숙의문 씨모친	사도세자죽음 에 연좌	1776.3.30 ~미상	-	위노(관비).
조재옥부인단체	정조즉위년 (1776)	관료 가족	조재옥의죄에 연좌	1776.4.5 ~미상	제주목	조재옥의 형인 조재환의 죄에 연좌. 위노(관비).
조재옥딸덕순	정조즉위년 (1776)	관료 가족	조재옥의죄에 연좌	1776.4.5 ~미상	제주목	조재옥의 형인 조재환의 죄에 연좌. 위노(관비).
정난주	순조1년 (1801)	황사영 처	황사영백서사 건연좌	1801.11.21 ~1838.2.1	대정현	위노. 유배지에서 사망. 최초로 제주도에 천주교소개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유배인 중 김제남부인 노씨가 딸인 인목대비가 인조반정 이후 복호 되면서 가장 빨리 복귀하고 있고 인성군 가족은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으로 이배되어 인조 15년(1637)까지 유배생활을 하며 제주유배와 합쳐 약 10년 동안 유배되었다. 여성유배인의 경우 제주로 유배된 후 형의 재논의가 이루어져 사형되는 경우는 없지만 김제남부인 노씨가 술을 팔아 유배생활을 하였고 정난주 역시 관노로 생을 마감한 점 등 유배여성들의 삶과 유배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제주유배 여성들은 약자의 위치에서 남성들보다 고단한 유배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환관

조선시대에는 내시부에 환관을 두고 대전(大殿)·왕비전·세자궁·빈궁(嬪宮) 등에서 감선(監膳)·사명(使命) 및 잡무 등을 맡게 하였는데, 그 수는 240명에 이른다. 그중 59명이 종2품의 상선(尙膳)을 비롯해 종9품의 상원(尙苑)에 이르기까지 관계(官階)를 가졌는데, 관제상 일반관직과 구별하고 엄히 규제하여 고려와 같은 큰 폐단은 없었다. 그러나 왕·왕비 등의 측근에 있음을 기화로 경제적 이권(利權)을 챙겼으며, 정치세력과도 연결되어 궁중의 공기를 크게 좌우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로 유배된 경우는 이와 같은 이유로 유배되기 보다는 왕과 관련되거나 사사로운 죄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표 7〉 환관유배인

유배인	연 도	신 분	사 유	기 간	장 소	비 고
최유연	-	환관	-	~1497.7.1	-	정역.
김순손	연산군2년 (1495)	환관	왕의 난폭함을 읍간	1496.윤3.28 ~1497.7.1, 1504.3.12 ~1504.3.30	대정현	정역, 충군, 민호로련입. 서천에서 이배되어 음.
박인손	연산군12년 (1506)	환관	하교를 듣지않았다하여	1506.3.24 ~미상	-	정역.
김삼달	숙종11년 (1685)	환관	기밀누설	1685.8.20 ~미상	제주목	가족포함.
이동설	숙종26년 (1700)	환관	지신패악	1700.2.2 ~미상	대정현	절도정배.
신우석	숙종26년 (1700)	환관	지신패악	1700.2.2 ~미상	대정현	절도정배.
김준완	숙종26년 (1700)	환관	지신패악	1700.2.2 ~미상	대정현	절도정배.
박중경	숙종26년 (1700)	환관	지신패악	1700.2.2 ~미상	대정현	절도정배.
강덕엽	정조즉위년 (1776)	환관	역마를타고역 졸을구타	1776.7.30 ~미상	정의현	위노.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유배사유가 확인되는 8명을 살펴보면 김순손이 연산군의 난폭함을 지적한 죄로 대정현에 유배되었고 박인손은 연산군의 하교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최유연의 경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sup>99)</sup> 김순손과 유배지에서 복귀하는 날짜가 같고 연산군시기 유배된 환관들의 죄가 연산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가 크기 때문에 최유연 역시 비슷한 사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숙종시기 김삼달은 성품이 위험스럽고 극악하다하여 제주목으로 유배되었으며<sup>100)</sup> 이동설, 신우석, 김준완, 박중경은 몸가짐이 패악하다는 이유로 대정현에 절도정배 되었다. 그리고 강덕엽은 역마를 타고 역졸을 구타하여 위노로 정의현으로 유배되었다.<sup>101)</sup> 환관유배인의 경우 다른 신분에 비해 가

99) 『연산군일기』 25권 3년 7월 1일 경자조. 「命放濟州定役內官金順孫 崔有淵」.

100) 『숙종실록』 16권 11년 8월 20일 무신조. 「備忘記 內官金三達賦性危險 倫理滅絕 窮兇極惡之事 不一而足 至以悖慢罔測之說 公然發口如此之類 不可一日置在輦轂之下 濟州牧全家定配 當日內押送」.

101) 『정조실록』 1권 즉위년 7월 30일 기해조. 「教曰 濫騎驛駟 毆打驛卒 聞是中官姜德曄云 本事猶是細故 聞來不覺體栗而膽掉 [...] 旌義縣限己身爲奴 渠之戴頭 卽是寬典 赦典勿揀」.

벼운 죄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는 환관의 신분상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중죄의 경우 대부분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환관의 유배생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유배사유별 실태분석

제주도는 261명이라는 많은 유배인이 유배된 지역으로 유배사유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개국 후 임용을 거부한 김만희, 한천, 이미를 시작으로 나라를 잘못 다스린 죄로 광해군이 유배되었으며 고종 44년(1907) 박영효가 대신암살 음모문책으로 유배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과거부정, 무고, 반란, 연좌, 왕의 개인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는데 유배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8> 과 같다.

<표 8> 유배사유별 종류<sup>102)</sup>

유배사유	유배인수	유배사유	유배인수
과거부정	11	연좌	76
무고	17	왕개인사유	3
반란관련	21	왕명거부	7
반란관련 왕으로 추대	5	왕정책비판	20
사회혼란	20	집권세력변화	8
상소	38	미상	8
업무과실 및 비리	27	총 합	261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102) 유배사유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는 신이중, 최유연, 김록, 이지달, 이선철, 최학령, 맹학술, 이종협 등 총 8명이다.

유배인의 유배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과거부정으로 제주로 유배된 유생의 경우 대부분 출신지를 속여 과거에 합격한 인물들이 충군으로 유배되는데 이들 외에도 민달용은 비봉(祕封)을 바꿨다는 이유로 유배되었으며<sup>103)</sup> 김정환은 궁인과 짜고 역관에 등제한 죄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임창군과 임해군은 숙종 5년(1679) 흥서에 임창군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소문을 이유로 제주목과 정의현으로 유배되는데 다른 왕족들의 반란사건의 왕을 추대되어 유배되는 것과는 달리 임창군과 임해군은 무고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또한 보우와 환성지안은 불교를 전파하여 흑세무민하였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환관 이동설, 신우석, 김준완, 박중경 등은 방자나인(房子內人) 월금(月錦), 영업(英業)과 몰래 간통하는 등 몸가짐이 패악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라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sup>104)</sup> 또한 예종 원년(1469) 민수가 실록을 수정한 이유로 제주로 유배되었고 왜구를 방비하지 못한 이유로 이회손이, 그리고 진주민란의 책임을 물어 백낙신과 김시연이 유배되는 등 업무과실로 인해 제주유배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마절도, 변방보고 조작, 정부미 부정운용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제주유배의 경우 가족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연좌의 경우 사화와 같이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오는 연좌와 반란사건과 관련되어 연좌로 유배되는 경우로 나뉜다. 이와 같이 구분 짓는 이유는 반란관련 유배인은 직접적으로 반란사건과 연관된 반면 연좌는 반란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유배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개국 초 태조의 임명을 거부한 이유로 김만회, 한천, 이미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이들은 방면된 후 제주도에 정착하였으며, 영조 48년(1772) 정언 유강은 반대세력을 임용한 왕명을 거부한 이유로 추자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종에 의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왕의 정책을 반대한 이유로 유배된 경우는 대부분 영·정조의 즉위시기와 고종 재위기간으로 영·정조 재위기간에는 두 왕의 재위를 반대하는 이유와 탕평정치에 대한 비판을 이

103) 『헌종실록』 11권 10년 4월 28일 갑자조. 「換祕封罪人閔達鏞 加刑一次 濟州牧旌義縣減死爲奴」.

104) 『숙종실록』 35권 27년 3월 27일 갑인조. 「內官李東高等 與房子內人 月錦 英業等 潛相交通 事覺下刑曹 屢加刑訊」.

유로 유배되었고 고종 시기에는 대원군과 민씨 정권에 대한 탄핵 등을 이유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고종 18년(1881) 이후에는 외국세력과 관련한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김평묵과 백낙관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 4. 유배기간별 실태분석

유형은 무기형(無期刑)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특별사면과 같이 국가에서 특별히 죄인을 방면하는 경우와 관료들의 상소 혹은 무고함이 밝혀질 경우에만 사면이 이루어졌다. 제주도로 유배된 261명 중 유배기간이 확인되는 유배인은 163명으로 나머지 98명은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 수가 많아 평균적인 유배기간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유배인 대부분이 1년에서 10년 정도 제주에 유배되었다.

〈표 9〉 제주유배인의 유배기간

유배기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10년	10년 ~20년	20년 이상	미상	총합
유배인수 (사망자)	47(24)	23(5)	19(5)	13(1)	12(2)	37(7)	8(0)	4(2)	98(2)	261 (48)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이 무기형임을 감안 한다면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유배되었다. 제주도가 최악의 유배지이며 유형이 무기형인 점을 살펴본다면 〈표 9〉와 같이 유배기간이 나타나는 점은 제주유배로 형이 끝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년 미만 제주유배인 47명 중 24명이 유배 중 사망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유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배인이 수는 감소하고 사망하는 유배인 수 역시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사사·자살하는 유배인 중에서 유배기간이 확인되는 27명 중 20명이 2년 이내에 사사·자살하였고 나머지



7명 중 4명이 유배 중 반란모의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사사되었다. 제주유배인 중 사망한 48명의 사망사유를 살펴보면 <표 10> 과 같다.

<표 10> 제주유배인의 사망사유

사망이유	제주유배 중			이송 중			서울로 이송 후			사면 복귀중	총합		
	사망	사사	자살	사망	사사	자살	사망	사사	자살		사망	사사	자살
유배지역 (제주/대정/ 정의추자/ 미상)	15 (3/4/2 /2/4)	12 (4/3/1 /·/4)	1 (·/·/1 /·/·)	-	1 (1/·/· /·/·)	1 (·/·/1 /·/·)	2 (·/·/· /1/1)	13 (·/6/ 2 /3/2)	-	3 (·/2/ /·/1)	20 (3/6/ 2/3/6)	26 (5/9/ 3/3/6)	2 (·/·/2 /·/·)
총 사망 자 수	28 (7/7/4/2/8)			2 (1/·/1/·/·)			15 (·/6/2/4/3)			3 (·/2/ /·/1)	48 (8/15/5/8/12)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총 유배인 261명 중 48명이 사망하는데 이와 같은 높은 사망률은 유배사유에 따라 제주유배 후 형의 가감(加減)이 재논의 되었음을 확인 시켜준다. 사망한 48명의 유배인 중 형벌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는 사사되는 26명과 자살한 2명, 서울로 이송 후 형신 중 사망하는 2명 등 모두 30명이고 유배지에서 사망한 15명과 복귀 중 사망한 1명은 병환으로 인한 자연적인 사망이었다. 그리고 유배복귀 중 사망한 나머지 2명은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 수몰 하였다.<sup>105)</sup> 경종 2년(1722) 정의현으로 유배된 조성복은 사형판결이 확정되자 유배지에서 자살을 하였고 경종 4년(1724) 정의현에 유배된 이시필은 서울로 이송 도중 자살을 하였는데 유배지에서 서울로 이송된 15명 유배인 모두 취조 중 사망하거나 사사된 점을 볼 때 서울 이송 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배인 중 서울로 이송되는 15명을 제외하고 4명은 제주도내에서, 그리고 31명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배되었다.

105) 『중종실록』 1권 1년 10월 13일 무오조. 「觀全羅道觀察使啓本 則前大司諫柳軒等五人 同乘一舟 自濟州出來 爲水賊所害云」.

〈표 11〉 제주유배인 이배지역

구분	육지				섬		총합
	전라도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일대	미상	전라도일대	제주도일대	
유배 인수	10	1(삼수) <sup>106)</sup>	3 (과평, 홍산, 교동) <sup>107)</sup>	3 <sup>108)</sup>	14	4 <sup>109)</sup>	35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이배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형이 감형되어 육지의 지역으로 이배된 경우와 형의 가감(加減)에는 변화가 없으나 제주도의 상황으로 인해 유배인을 이배시킨 경우 2가지로 나타난다. 육지로 이배된 경우는 대부분 전라도에 이배되었으며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도 3명이 이배되었다. 그리고 이경여와 송상주는 각각 함경도와 북방으로 이배되는데 이경여의 경우 소현세자의 3명의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삼수로 이배되었다. 같은 사유로 이배된 유배인의 경우 전라도의 섬으로 이배되고 있지만 이경여의 본관이 전주이기 때문에 본관과 가까운 지역의 섬이 아닌 함경도로 이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상주는 정치적 사유와 관계없이 북방으로 이배되었다.

유배인이 전라도의 다른 섬으로 이배된 경우는 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내부의 문제점 때문에 이배가 나타났다. 신득연은 이경여와 같은 이유로 거제도에 이배되었으며, 김사찬 등 10명은 이재수의 난<sup>110)</sup>으로 인해 반란군 세력이 제주성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전라도의 섬으로 이배를 시켰다. 이들은 형벌의 가감(加減)을 떠나 사회적인 이유로 이배되었는데 각각 전라도의

106) 『인조실록』 49권 26년 윤3월 17일 임모조. 「上乃命 安置敬輿于三水 茂績于甲山 時 三兒在濟州 上疑敬輿等 遂徙之.

107) 『영조실록』 27권 6년 9월 18일 갑신조. 「至是教曰 尹鳳朝參酌放送), 동왕 100권 38년 7월 11일 신미조. 「上以 韓光肇之鳥配過矣 命定配鴻山, 『정조실록』 34권 16년 2월 10일 기유조. 「命移配金宇鎮于喬桐初 上密遣宣傳官 賚標信入濟州 出宇鎮于棘中 且允臺啓.

108) 『숙종실록』 36권 28년 5월 17일 무술조. 「憲府啓曰 大靜安置罪人宋相周 因減等限滿 直爲放送 臣等竊不勝駭然之至 [...] 請囚人宋相周邊遠定配 從之, 『영조실록』 31권 8년 6월 21일 병자조. 「李萬維出陸 以旱災疏釋也.

109) 『광해군일기』 97권 7년 11월 3일 을해조. 「義禁府啓曰 濟州三邑 則罪重之人 例爲定配 故罪人李禎慶定配於旌義矣 今聞禎慶曾經旌義縣監 必與吏民相親 不無貽弊之事 他邑改定配宜當 敢稟 傳曰 依啓, 『정조실록』 13권 6년 1월 14일 신해조. 「判義禁洪樂性啓言 濟州御史別單中 州城距船所未滿十里 如趙貞喆 沈翼雲之逆孽 締結陸商 交通京信 宜移配貞喆於旌義縣 翼雲於大靜縣 從之, 『고종실록』 41권 38년 6월 7일 (양력). 「濟州牧所在 [...] 流十年罪人韓善會 移配于楸子島.

110) 이재수의 난은 ‘신축교난’, ‘제주민란’ 등 여러 명칭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재수의 난으로 통칭한다.

섬들로 이배됨을 살펴보았을 때 유배지로서 제주도나 전라도의 섬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제주도가 가장 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주도가 최악의 유배지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내로 이배된 사례는 4명의 유배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정의현감을 지낸 이정경은 관마를 절도한 이유로 정의현에 유배되었지만 아전이나 백성들과 연계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정현으로 이배되었다. 심익운과 조정철은 배소가 제주목성과 너무 가까워 육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각각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이배되었으며 그리고 한선회는 이재수의 난을 이유로 제주목에서 추자도로 이배되는데 제주도내 이배의 경우 각각 다른 사유로 이배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서의 이배가 실록의 기사에 나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수문제로 인해 대정현 내 배소에서 창천리로 이배된 후 다시 대정현 내로 배소를 이동한 김정희의 경우 실록의 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형이 가지는 형별적인 특징과 유배인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죄인인 유배인의 관리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은 제주도의 삼읍과 추자도를 개별 유배지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 내의 이동에 관해서는 지역관료의 재량 안에 이루어졌으나 유배 배소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명령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했다. 이는 제주도의 특징을 규정지을 때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두면서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지만 유배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추자도 4개 지역을 각각 하나의 유배지로 개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유배인의 사망한 사례와 타 지역으로 이배된 사례를 종합해보면 제주도는 주로 정치적 중죄인들이 유배된 지역으로써 조선의 영토 중 가장 많은 인물들이 유배된 곳이다. 감형되거나 민란과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배되지 않았고 유배인 중 48명이라는 많은 수의 유배인이 사사·사망한 점을 볼 때 제주도는 사형 바로 이전의 형을 집행 받은 인물들이 유배되는 최악의 유배지로 형이 다시 논의되는 정치적 중죄인이 유배된 유배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

## IV. 제주유배인의 노정과 유배생활

### 1. 제주유배인의 노정

세종실록 지리지 대정현조에 따르면 전라도에서 제주도로 오는 항로는 3가지이다..

배가 왕래하는 곳이 3이 있으니, 나주에서 떠나면 무안(務安)의 대굴포(大掘浦)와 영암의 화무지(火無只)·와도(瓦島)와 해진(海珍)의 어란량(於蘭梁)을 지나서 대개 7주야 걸려 주자도(舟子島)에 이르며, 해진에서 떠나면 삼촌포(三寸浦)를 따라 거요량(巨要梁)·삼내도(三內島)를 지나고, 강진(康津)에서 떠나면 군영포(軍營浦)를 따라 고자(高子)·황이(黃伊)·노슬도(露瑟島)·삼내도(三內島)를 지나서 모두 3주야 걸려 주자도에 이른다. 위의 3곳의 배가 모두 이 섬을 지나서 사서도(斜鼠島)·대화탈도(大火脫島)·소화탈도(小火脫島)를 지나 제주 애월포(涯月浦)의 조천관(朝天館)에 이른다. 대개 화탈(火脫) 사이에는 두 줄기 해수(海水)가 섞여 흐르므로 파도가 몹시 사나워서 무릇 왕래하기가 힘들다.<sup>111)</sup>

그러나 제주로 입도하는 모든 배가 위의 사료의 해로를 통해 들어오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계절과 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변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의 기사에 나오는 해로는 기본적인 해로일 뿐 정형화된 항로는 아니었다. 이는 이종의 『남사일록』에서도 확인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가 떠나 10리에 가우도 지나 5리 가서 비래도를 지나고 또 10리를 가서 복도를 지나고 또 10리를 가서 사후도를 지나고 5리를 가서 완도의 가리포 진을 지나 40리

111)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조. 「舟子往來處有三 發羅州則歷務安大掘浦 靈巖火無只瓦島 海珍於蘭梁 凡七晝夜 至舟子島 發海珍則從三寸浦 歷巨要梁 三內島 發康津則從軍營浦 歷高子 黃伊 露瑟島 三內島 皆三晝夜 至舟子島 右三處舟子 皆經此島 過斜鼠島 大小火脫島 至于濟州涯月浦朝天館 盖火脫之間 二水交流 波濤洶湧 凡往來者 難之」.

를 가서 밤에 백도 동쪽기슭에 정박하였다. 오늘은 80리에서 100여리를 간 셈이다. 이날 밤 달이 밝아 산 아래 외단 촌에 연기가 피어나고 개 짖는 소리가 나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다. 이 지경은 흰모래와 푸른 소나무로 가득하다.

12월 7일 오후에 눈이 내리고 큰 바람 일고 아침에 동쪽으로는 청산도, 서쪽으로는 소안도, 진도, 추자도가 까마득히 보인다. 두 개의 돛을 달고 있다. 낮에 사서도를 지났는데 여기가 바로 제주의 큰 바다이다. 여기서부터 바다는 더욱 넓고 물결도 더욱 높아, 솟았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풍파 속에 기둥의 새끼줄을 잡은 사람들이 모두 울타리를 두드려 짐승을 못는 듯한 외치는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이곳이 소위 물마루일 듯 했다. 바다를 넘으면서 뱃사람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는데, 뱃사람 전부가 배를 출발해서부터 곳곳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도 서너 차례 이상 하였다.

동쪽에는 동여서도가 있고, 서쪽에는 대소화탈도가 있다. 검은 구름이 서쪽바다에 일어나더니 눈을 날리는 바람이 어지러워지자 뱃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떨미를 하며 정신 없이 쓰러졌다. 그런데도 뱃사람들은 “오늘은 바다를 건너기가 비교적 쉬운 것이다.”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제주 큰 바다를 건너기가 어렵다는 것은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화북 방호소 포구에 정박하였다.<sup>1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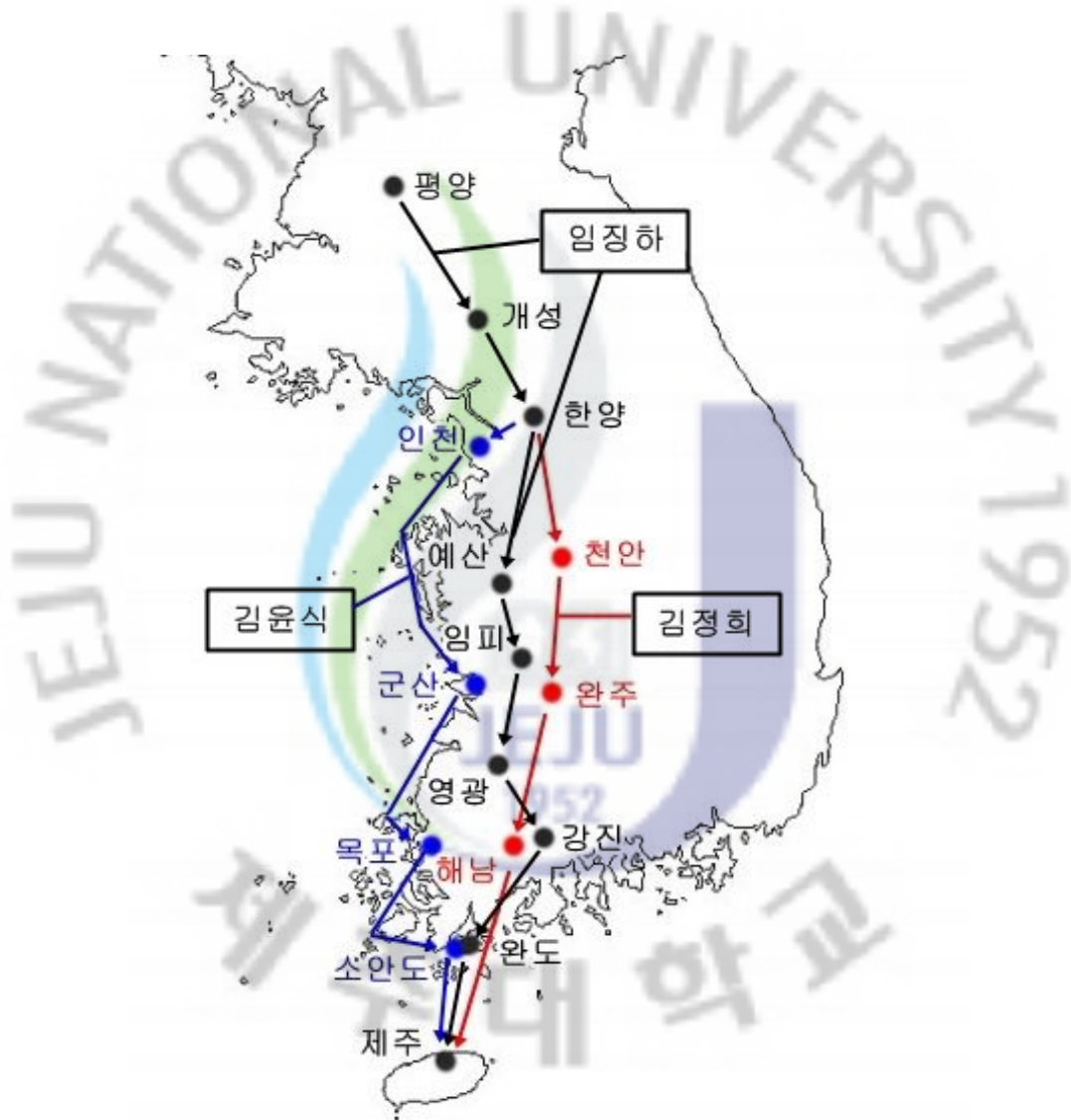
숙종 5년(1679) 9월 서울을 떠나 제주로 떠난 제주안핵겸순무어사 이증의 행적을 적은 『남사일록』은 이증이 제주도로 오는 해로와 배안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증의 일정을 살펴보면 10월27일 한양을 떠나 11월 25일 강진에도착해 강진의 금릉객사에 묵었는데 눈비가 자주 내려 열흘 가까이 제주 뱃길이 막혔다. 12월 6일 순풍이 불어 배가 남당포에서 출항했다. 제주도로 오는 노정(路程)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날씨에 따라 다양한 해로를 걸쳐서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증의 경우와 같이 예정일을 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는 제주로 입도하는 모든 배들이 겪었던 공통점이다. 유배인의 제주입도 역시 지리지에 언급된 항로와 차이는 없었다. 유배인이 목사와 함께 제주도로 입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적인 이유로 제주에 오는 경우에도 전라남도 강진, 해남, 영암을 통해 시작하는 해로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신분에 따라 특별한 방법이나 다른 해로를 통해 제주도로 입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정을 통해 제주도로 입도하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112) 이증,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36~40쪽.



〈표 12〉 제주유배인의 유배경로

유배인	유배경로
임징하	평안도 평양 → 황해도 개성 → 한양 → 충청도 예산 → 전라도 임피 → 전라도 영광 → 전라도 강진 → 전라도 완도 → 별도포 <sup>113)</sup>
김정희	한양 → 충청도 천안 → 전라도 완주 → 전라도 해남 → 화북포 <sup>114)</sup>
김윤식	한양 → 경기도 인천 → 전라도 군산 → 전라도 목포 → 전라도 소안도 → 산지포 <sup>115)</sup>



〈그림 2〉 제주유배인의 노정, 〈표 12〉 제주유배인의 유배경로 참조 작성.

113) 임징하 씌, 김익수 역, 『서재집(西齋集)』, 화신문고, 2004, 168~183쪽.

114) 조평환,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에 나타난 제주의 생활정서」 『동방학』 제13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186쪽.

115) 김윤식 씌, 김익수 역, 『속음청사(續陰晴史)』, 제주문화원, 1996, 17~29쪽.



출발지는 같지만 중간 기착지와 제주도 도착지는 각각 달랐고 유배인을 태운 배 역시 해로가 바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도착지인 경우 유배인이 제주도에 입도하게 되면 먼저 제주목사에게 보고를 한 뒤 유배지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목관아와 가장 가까운 별도포나 화북포, 조천관을 통해 제주도로 입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주유배인의 노정을 살펴보면 광해군 6년(1614) 7월 4일 영창대군의 처형을 비판하고 영창대군을 죽인 강화부사 정항의 처벌을 주장하다 제주로 유배된 정온은 1614년 8월 13일 해남 어란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별도진(別刀津)에 도착하였고 목사에게 보고를 한 후 대정현 안성리에 위리안치되었다. 신명규는 현종 15년(1674) 5월 11일 제주유배 명을 받고 15일 걸려서 해남현에 도착, 다시 6월 17일 해창포에 당도하여 여기서 7월 5일 출항하였는데, 역풍을 만나 어란포에 정박, 7월 8일 보길도에 도착, 7월 12일 보길도 백도리에서 출발하여 13일에 별도포에 도착하였고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으로 인해 제주로 유배된 송시열은 태안을 거쳐 강진에 온 다음 풍랑으로 인해 보길도에서 정박한 다음 제주로 오는 항로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조관빈은 영조 7년(1731) 11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10여일 만에 강진에 도착하고 여기서 일기불순으로 15일 간이나 바람을 기다리다가 12월 17일 출항하였는데 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완도, 백도(보길도), 소안도 등 여러 섬에서 며칠씩 바람을 기다린 뒤 12월 27일에야 별도포에 도착한 후 대정현으로 유배되었다. 숙종 32년(1706) 8월 22일 유배명을 받은 김춘택은 해남 해창포에서 출항하였는데, 이 때 동승한 인원이 제주목사 등 60여 명이었으며, 보길도에 도착하자 풍세가 심하여 여러 날 바람이 잔잔하기를 기다렸다가 추자도를 거쳐 9월 말경 조천관에 도착하였으며<sup>116)</sup> 김정희는 현종 6년(1840) 9월 4일 대정현으로 유배명을 받은 후 고향인 천안을 지나 전라도 삼례와 완주를 거쳐 해남현을 떠나 9월 27일 당일에 화북포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그리고 고종 34년(1897) 제주목으로 유배된 김윤식은 12월 20일 유배명을 받은 후 고종 35년(1898) 인천 월미도에서 해룡함을 타고 출발하여 전라도 군산, 목포를 거쳐 소안도를 지난 후 산지포로 입도하였다.<sup>117)</sup> 영조 3년(1727) 7월 초에 평안도 순안(평양인근)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116) 고창석,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6, 64~65쪽.  
117) 황경수,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26~27쪽.

도중 대정현으로 유배지를 옮기라는 명을 받은 임징하<sup>118)</sup>는 평안도 순안을 출발하여 평양, 개성, 한양, 영광을 걸쳐 강진을 통해 별도포로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서재집』의 나와 있는 임징하의 노정을 살펴보면 총 육·수로틀 합하여 약 2,230리이다. 임징하의 첫 유배지가 평안도 순안이고 평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먼 곳인 제주도의 거리가 3천리에 미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종류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해야 했고 실제로 세종 12년(1430)에 이와 관련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제주도로 유배되는 노정 중 추자도는 그 중간의 위치해 있으면서 지리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과연 유배인들이 제주도로 입도하는 경우 이 추자도를 경유해서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행미의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에 따르면 전인봉이 쓴 『유배지에서 만난 한국역사』에 기록된 후풍 사례를 들어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임징하가 추자도를 거쳐 별도포에 도착하였다고 적고 있다.<sup>119)</sup> 그러나 실제로 임징하는 추자도를 경유하지 않고 제주도로 입도하였다.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에 따르면 임징하는 완도, 보길도, 추자도에서 수일을 머물다가 이듬달 말경에 밤에 별도포로 도착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임징하가 지은 『서재집』에 따르면 완도의 가라포진에서 17일에 출발하여 보길도에 도착, 그리고 제주도 별도포로 입도하였다. 『서재집』에 있는 추자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징하가 뱃사람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듣기를 제주의 물길을 천 리라고 하던데, 지금부터 그것이 지난친 말이 아님을 알겠네. 뚝 한 번 달고 도달하기엔 또한 어렵지 않은가. 내가 추자도를 살펴보니, 실은 그 사이가 점심 먹을 만한 역참에 있구나. 지금 동풍 때문에 바로 추자도로 향했다가 다시 서북풍을 기다려 한 번 뚝을 달아 제주에 도착하면, 어찌 안전하고도 또 쉽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뱃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추자까지는 비록 어렵지 않다 해도, 추자에서부터 제주에 이르려면 대소화탈 섬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동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야합니다. 그것은 멀로 험해서 여기서 바로 제주로 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추자의 4면에는 돌부리가 많아 배를 정박하는데

118) 『영조실록』 12권 3년 7월 3일 정사조. 「安置任徵夏于大靜縣」.

119) 전인봉, 『유배지에서 만난 한국역사』, 민미디어, 1999, 201쪽.

매우 불편합니다. 만약 역풍이라도 만나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누가 기꺼이 여기를 경유하겠습니까?”고 하였다. 임정하는 말하기를, “그렇군.”라고 하였다.<sup>120)</sup>

김정희 역시 『유배지에서 만난 한국역사』에서 해남에서 출발하여 추자도에 이르렀다가 이튿날 화북포에 도착하였다고 하지만<sup>121)</sup> 『완당선생전집(阮堂先生全集) 권수(卷首)』 완당김공소전(阮堂金公小傳)에 따르면 27일 해남을 출발하여 저녁에 제주도에 도착하자 제주사람들이 “날아서 건너온 것이다”라고 하며, 실로 경이감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한다.<sup>122)</sup> 사료에 대한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자도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방향을 잡아 주는 기준점과 같은 역할과 운항 도중 폭풍우 등 제주도로 바로 갈 수 없을 때 중간 정착하는 후풍처일 뿐 경유지로써의 역할을 했던 섬이라고는 볼 수 없다.

## 2. 제주유배인의 유배생활

### 1) 제주도에 대한 인식

제주도는 많은 유배인들이 유배된 지역임과 동시에 그 유배인들이 저술한 많은 문학이 남겨져 있다. 그러나 유배인들의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제주도와 관련된 문헌 보다는 유배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임금에 대한 충정에 관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비록 제주도에 유배되었지만 그들의 바라는 점은 하루 빨리 제주도를 벗어나기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는 유배문학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김정희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과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그리고 정온의 「대정현동문내위리기(大靜縣東門內圍籬記)」에서는 다른 문집과는 달리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면서 조선조 제주사회모습과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김정희와 이건, 정온의 문학에서 나

120) 임정하 씌, 김익수 역, 『서재집(西齋集)』, 화신문고, 2004, 168~183쪽.

121) 전인봉, 앞의책 224쪽.

122) 김정희, 『완당선생전집 권수(阮堂先生全集 卷首) 완당김공소전(阮堂金公小傳)』, 수생당, 1934, 5쪽, 채인용; 조평환, 「주사 김정희의 유배서간에 나타난 제주의 생활정서」,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타나는 제주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고장의 풍토는 별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 일마다 다르고 걸핏하면 탄식하고 놀랄만하지만, 불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기후는 겨울에도 간혹 따뜻하고 여름에도 간혹 시원하여 변화가 무쌍하다. 공기가 따뜻하면서도 사람에게 달라붙는 것이 상당히 날카롭다. 사람들은 의복과 음식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쉽다. 더욱이 구름과 안개가 항상 어둡게 끼어 있어서, 개인 날이 적고,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니, 음습하고 답답하다. 또한 땅에는 벌레가 많은데, 파리와 모기가 더욱 심한가 보다. 무릇 지네, 개미, 지렁이 등 여러 꿈틀거리는 것들이 모두 겨울을 지나도 죽지 않아서 건디기가 무척 어려운데, 생각해보니 북쪽은 추워서 이러한 피해가 적을 것이다.<sup>123)</sup>

(나)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사갈(蛇蝎)이요,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 더구나 서울의 소식과 고향의 소식에 있어서는 이를 몽혼에나 부치는 외에 들을 길이 없다. 질병이 있을 때는 단지 스스로 손을 매어 죽기를 기다릴 뿐이요, 침약으로 치료할 방도는 없다. 이곳은 실로의 죄지로서 사람이 건딜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죄 있는 사람을 이 땅에 추방하는 것은 깊이 적의함을 얻은 것이라 하겠다.

탐라는 통국의 죄지(罪地)요, 유찬(流竄)은 방가(邦家)의 중전(重典)이다. 십년의 세월은 가장 오랜 것이고, 불녕은 사람 중에 가장 약한 것이다. 사람 중에 가장 약한 몸이 귀양살이의 중전을 입어 탐라 죄지에 유적되었다가 가장 오랜 세월을 지나 마침내 어북의 장을 면하여 연곡의 하에 생환하여 종반의 뒤에 중척하고 태평의 세를 좌도하게 됨은 이는 성조생성(聖朝生成)의 은혜와 조선의 적전지경이 아님이 없으니 깊은 밤 잠꼬대에서도 고마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모든 나의 자손은 체념하여 세세대대로 충효와 절을 힘써야 한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sup>124)</sup>

123)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충암집(沖庵集)』 권4. 「此邑風土 別是一區 事事殊異 動可吁駭 一無可觀 氣候冬或溫夏或涼 變錯無恒 風氣似暄而着人甚尖利 人衣食難節 故易於生疾 加以雲霧恒陰翳少開霽 盲風怪雨 發作無時 蒸濕沸鬱 又地多蟲類 蠅蚊尤甚 與凡蜈蚣蟻蝨等諸雜蠢蠕之物 皆經冬不死 甚爲難堪 想北邊寒冽」.

124) 이진,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규장집(葵窓集)』 권5. 「最苦者粟飯也 最畏者蛇蝎也 最悲者波聲也 以至於日下之消息 鄉關中之最弱也之音信 付之夢魂之外 無路可聞 疾病之來 只自束手待死 無以致 鍼藥之方 此實通國之罪地 人所不堪之處 國家所以放逐有罪人於此地 深得其宜也. 耽羅通國之罪地 而流竄國法 之重典也 十年歲月 之最久 而不佞人 以人中最弱之身 蒙流竄之重典 謫耽羅之罪地 經 最久之歲月 而終免魚腹之葬 生還輦轂之下 重廁宗班之後 坐度太平之世 此無非聖朝生成之恩 祖先積善之慶 中夜言念 感淚時零 凡我子孫 體念于此 世世代代 益懋忠孝之節 是余所望也」.

(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혀를 끝끝 차며 탄식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별다른 지역이구나. 나와 같이 죄를 지은 자가 거처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내가 전에 성상의 정책을 받고 경성 관관이 되어 북쪽 변방으로 갔었는데, 북쪽 변방의 풍토도 역시 괴상하였지만 그곳은 여기에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다. 죄에는 경중이 있기 때문에 거처하는 곳이 좋고 나쁜 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125)</sup>

(가)는 중종 15년(1520)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제주목에 유배된 김정이 2년간의 유배생활을 통해 체험한 제주의 풍토와 상황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의 내용이고 (나)는 인조 6년(1628) 아버지인 인성군 모반사건과 관련되어 어머니 윤씨와 2명의 형과 함께 정의현으로 유배된 이진이 남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후반부 내용이다. 그리고 (다)는 광해군 6년(1614) 영창대군의 처형을 비판한 이유로 대정현에 위리안치된 정온이 남긴 「대정현동문내위리기(大靜縣東門內圍離記)」의 내용이다.

(가)에 따르면 김정은 육지와는 다른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겨울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육지보다 따뜻하다고 결론을 짓기 보다는 북쪽보다 춥지 않아서 벌레들이 죽지 않아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제주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의 내용이 자연환경과 관련된 반면 (나)는 이진이 유배인이라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제주도의 삶을 전하고 있다. 이진은 제주도가 벌레가 많고 병에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와 같이 낙후된 제주도 상황으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되는 것이 유형 중 가장 형벌이 심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에서는 육지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제주도의 삶을 경험하기 전 주민을 통해 들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정온이 유배되기 전 들었던 제주도가 항상 비가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매습(霾濕)으로 인해 현기증으로 쓰러진다는 내용이 현실과 다른 점을 이상히 여겨 주민에게 물어보니 유배되기 전에 들었던 내용과 일치함을 알고 (다)의 내용과 같이 제주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가)와 (나)의 내용이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제주도의 환경이라면 (다)는

125) 정온 씌, 조동영·박대현 옮김, 「대정현동문내위리기(大靜縣東門內圍離記)」 『국역 동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0. 160~164쪽. 「宜吾負罪者居之 余昔年承恩謫幸北 塞北塞風土亦云乖常 援彼比此 不啻天淵 罪有輕重 故所居之善惡亦異」.



자신의 직접 경험하기 전의 내용이다. 그러나 (가)~(다)에서 모두 제주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가)와 (나)의 경우와 같이 제주 유배를 경험했던 인물들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육지로 전해지면서 그러한 인식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조선사회에 정착화 되면서 (다)의 경우처럼 제주도민과 유배생활을 하지 않은 유배인 역시 제주도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중앙정계에 밀려나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자신의 영역이 한정되면서 느끼게 되는 유배인의 박탈감과 함께 작용하면서 조선조 전체에 걸쳐 일반적인 시각으로 인식되었고 결국 조선사회에 있어서 제주도는 중죄인들이 유배되는 최악의 유배지로 고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유배인의 유배생활

제주로 입도한 유배인들은 먼저 제주목관아에서 제주목사에게 신고를 한 후 지정된 배소로 이동하였다. 정운의 대정현 유배시절 큰아들 창시에게 보낸 편지 기시아서(寄詩兒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614년 8월14일 정운 제주부에 들어가 제주목사에게 신고를 했다. 그리고 인근 민가에서 9일을 묵은 뒤 23일 제주목에서 70여리 떨어진 배소(配所)를 향해 떠났다. 애월포(愛月浦)에서 하루를 묵고 적막강산과도 같은 대정현에 도착한 것은 24일. 그러나 정작 위리안치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시울타리가 완성이 돼 있지 않았다. 결국, 동계는 3일을 기다린 뒤 27일이 돼서야 사망에 가시울타리를 치고 인신을 감금한 위리안치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sup>126)</sup>

정운의 편지에 따르면 제주도에 입도한 후 지정된 배소에 안치되는 기간이 14일이 걸리고 있다. 김정희의 경우에는 현종 6년(1840) 9월 27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10월 1일 대정현의 배소에 도착하였다.<sup>127)</sup> 정운과 김정희의 유배를 살펴보

126) 정운, 「기시아서(寄詩兒書)」, 초계정씨 동계종택 소장, 한국중앙연구원기탁, 연합뉴스 2005년 6월 14일 기사 참조.

127) 조평환,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에 나타난 제주의 생활정서」 『동박학』 제13호,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



면 제주목에서 배소로 이동한 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온과 김정희 모두 위리안치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정온의 배소는 원래 민가였으나 배소로 정해지면서 대정현감이 서실을 새로 만들면서 시간이 걸렸고 김정희의 경우에는 군교(軍校) 송계순의 집에서 바로 유배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두 유배인의 일정을 살펴보았을 때 유배지역과 유형의 집행방법의 경우에는 형이 집행되면서 확정되지만 유배인을 안치시키는 배소문제의 경우에는 지역상황에 따라 지역관료가 지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 14년(1519) 제주로 유배된 김정희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따르면 “기와집은 아주 적고 두 현의 관사조차도 초가지붕이다.”<sup>128)</sup>라고 말하고 있다. 유배인의 신분이 대부분 양반 이상인 점을 봤을 때 유배 이전에는 와가(瓦家)에서 생활을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유배인이 초가(草家)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목사와 현감이 유배인을 배려한다고 해도 유배이전의 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초가에서의 유배생활은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거문제 외에도 음식 역시 유배인에게 적응하기 힘든 문제였는데 인조 6년(1628) 제주로 유배된 이건은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sup>129)</sup>이라 적고 있고 김정희 역시 아내에게 보내는 서신들 중 대부분이 음식에 관한 내용일 정도로<sup>130)</sup> 유배인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음식 문제였다. 제주도는 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쌀이 부족해서 대부분 조나 보리 등 유배인들이 접하지 않았던 곡물과 함께 육류는 거의 없었고 생선이 주된 반찬이었다. 또한 김정희의 서신과 이형상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서 저자와 장이 없다고 하는 점을 봤을 때 돈이 있어도 매매가 없어 유배인이 원하는 음식과 물품을 사기도 어려웠다.

주거문제, 음식문제와 함께 제주도의 풍토와 이로 인한 질병 역시 유배인이 유배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 중 하나였는데 특히 대정현은 삼읍 중 바닷가와 가장 가깝고 지형이 낮아서 장독이 기운이 가장 심하고<sup>131)</sup> 의복과 음식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쉽다<sup>132)</sup>고 말하였다. 또한 정온의 경우 바깥활동에 대한 제

고전 연구소, 2007, 186쪽.

128)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瓦屋絶少 如兩縣官舍亦茅 蓋也」.

129)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最苦者粟飯也」.

130) 예술의전당, 『추사(秋史) 한글판지』, 우일출판사, 2004, 225~234쪽.

131) 정온, 「대정현동문내위리기(大靜縣東門內圍籬記)」. 「地形卑下 瘴毒之氣 三邑中最甚」.

132)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人衣食難節 故易於生病」.

한으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측간을 갈 때에도 부축을 받거나 지팡이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성치 않았고 김정희 역시 가족들과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에 항상 아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유배생활의 고된 삶을 표현하였다.

유배인들은 육체적인 문제와 함께 정신적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바가 간절하였다. 위리안치 유배인은 혼자 입도하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다른 유배인보다 더 컸다. 또한 행동이 제약되면서 실질적으로 배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서책을 읽거나 저술활동을 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루한 생활의 반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배인들과 달리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 유배인 역시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거의 비슷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문학의 가장 큰 특징인 임금에 대한 충성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관직 복귀에 대한 갈망이 유배문학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유배인이란 신분이 기본적으로 고단한 삶이지만 추자도 유배인의 경우에는 제주도내의 경우보다 더 힘든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다. 정조시기 추자도로 유배된 안조환의 『만언사(萬言詞)』<sup>133)</sup>에 당시 유배생활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이집가서 의지(依持)하자 가난(家難)하다 핑계하고  
저집에가 주인(主人)하자 녹고(緣故)있다 칭탈하네  
이집저집 아모텐들 적객주인(謫客主人) 뉘종달고

아침이면 마당쓸기 저녁이면 불매히기  
별이나면 쇠똥치기 비가오면 도랑치기  
들어가면 집지키기 보리명석 새날리기

내 생애(生涯) 내벌어서 구차(苟且)를 면(免)차하니  
처음에 못하던일 나중은 다배흔다.  
자리치기 먼저하자 틀을꽃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뽑내면서 바디를 드놓을제

133) 양순필, 『만언사산고(萬言詞散稿)』, 탐라문화, 1990, 34~47쪽. 안조환이 추자도로 유배된 정확한 연도는 확인되지 않고 정조시기에 유배된 것으로만 확인된다.

두어깨 무어지고 팔과목이 부러진다.  
 명석한일 겨러내니 보리닷말 수공(手工)이오  
 도래방석 틀었으니 돈오분(五分)이 값이로다.  
 약(弱)한근력(筋力) 강작하여 부지런을 내자하니  
 손뿌리에 피가나서 조희골모 얼리로다  
 이렇고도 사자하니 사자하는 내그르다  
 실같은 이잔명(殘命)을 끊음죽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목숨 내목숨 뿐이로다  
 인명(人命)이 지중(至重)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만언사』에 나타나는 추자도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유배인의 생활을 지원해줄 관료가 없었고 지역 주민들 또한 기후, 풍토 등 자연환경이 나빠 농사도 잘되지 않아 주된 생업이 어업활동을 통해 보리 등과 교환하여 겨우 살아갈 정도로 빈곤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배소를 제공해 주지 않을 정도로 인심이 없었으며 배소를 정하더라도 방이 없어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추자도의 유배생활은 힘들었다.

제주도의 다른 지역 유배인이 보통 교학활동이나 저술활동을 하는 반면 안조 환은 일반 양인이나 천민들이 하는 일을 하였는데 유배생활의 고단함을 직설적으로 『만언사』에 담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내에서의 지역적 차이와 관련해서 전라도의 다른 섬에서도 제주도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선사회에 유배인의 생활적인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 철종 2년(1851) 임자도에 유배된 조희룡은 관리가 없어 생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 친우들이 서울에서 그림을 팔아 유배생활비용을 대주었으며 마을 주민들도 그림을 받고 먹을 것을 주었다.<sup>134)</sup>

(나) 영조 44년(1768) 상소문이 문제가 되어 소흑산도(우이도)로 유배된 김약행은 소흑산도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타 지역으로 이배되는 것이 아니라 흑산도로 유람을 가고있다. 또한 소흑산도에 수군진이 있어 유배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다.<sup>135)</sup>

134) 고석규,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생활에 대하여」 『도서문화』 제24집,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소, 2005, 71~77쪽.

135)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유대흑기(遊大黑記)> 를 통해 본 조선후기 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권, 2010, 143~148쪽.

(가)~(나)와 같이 남해안의 다른 섬 유배지의 경우 제주도 본도와 추자도와 같이 관리의 유무에 따라 유배생활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유배인의 유배 생활하는데 있어 관리의 지원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형적 특징으로 외부와 단절되는 섬의 특징상 관리가 없는 섬의 유배인은 육지의 유배지나 관리가 존재하는 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 V. 유배인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

### 1. 유학의 전파와 발달

제주유배인과 제주유학의 연관성은 광해군 10년(1618) 이익이 대정현에 유배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익의 제자인 고흥진<sup>136</sup>은 65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다른 제자인 김진용은 인조 13년(1635) 진사시험에 합격,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여 장수당이 건립되자 그 곳에서 후진을 가르치는 등, 지식인의 제주유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영남학파가 제주도에 전해지면서 문과 입격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표 13〉 제주도 문과 입격자 분류

시기	1392 ~1450	1451 ~1500	1501 ~1550	1551 ~1600	1601 ~1650	1651 ~1700	1701 ~1750	1751 ~1800	1801 ~1850	1851이후	총합
합격 자수	1	2	-	-	1	10	11	16	5	12	58
주요 유배인	-	-	-	-	이익	신명규, 송시열, 김진구	-	-	김정희	-	-

(자료: 『조선왕조실록』, 『제주유림육백년사』 참조.)

즉 이익이 유배된 6년이라는 시간은 기존의 제주도유학이 일부 관료나 서적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에서 유배인을 통한 주류학파의 제주도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익의 문하생인 김진용<sup>137</sup>이 장수당에서 후진을 가르쳤

136) 고흥진(1602~1682): 현종 때의 문신. 일명 봉래, 자는 퇴이, 제주시 이호동 가물개에서 출생, 1618년 제주에 유배를 온 간옹 이익의 문하에서 김진용과 함께 배웠다. 이어 반계 유형원과 더불어 정주학, 사서, 지리학 등을 강론하였다.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 편찬을 도왔다. 1664년 65세로 문과에 응시, 급제하였다. 풍수지리에 밝아 탐라사절의 하나라고 칭해졌다. 『역주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612쪽.

137) 김진용(1605~1663): 인조효종 때의 선비, 훈학자. 자는 진숙, 세칭 명도암선생이라고 불렸다. 본관은 광산이며 구좌읍 괴촌에서 출생, 아들 7남 중 계용과 계창도 문과급제, 명도암은 1635년 진사시험에 합격, 1643년 숙녕전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여 장수당이 건립되자 그 곳에서 후진을 가르쳤다. 1849년 목사 장인식이 향현사에 영곡 고득중과 함께 봉향했다. 『역주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612쪽.

고 이익이 제주도에 유배되어 낳은 자손들이 문·무과에 고루 합격하면서 학파의 전통을 이어간다. 그 후에도 현종 15년(1674) 유배된 신명규가 숙종 33년(1707) 문과에 급제한 오정빈을 가르쳤고 기사환국으로 인해 숙종 15년(1689) 송시열을 포함하는 노론계통의 인물들이 대거 제주로 유배되면서 제주도의 학문이 노론계열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게 된다.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은 숙종 15년(1689) 왕세자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남인들이 ‘나라의 큰 경사에 감히 방자하게 상소를 올려 인심을 현혹시켰다’고 주장으로 인해 숙종이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세력을 제주로 유배 보내는데<sup>138)</sup> 이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주사회에 유학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유배인과 제주유학의 상관관계는 영남학파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제주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학파는 기호학파라 볼 수 있다. 기사환국으로 유배된 김진구가 유배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하는데 그의 문하에 있던 고만침, 이중발, 양수영, 오정빈 등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고 이들이 계속 후학을 양성하여 17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문과입격자가 나타나는 등 제주유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시기별로 보면 제주유학은 1650년 이전까지는 영남학파가, 그 이후에는 기호학파의 영향을 받지만 제주유학은 특정 유파와 계보적 정통성과는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육지와는 달리 학문적인 기반이 약했던 제주도는 유배인이 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다. 그런데 시기마다 다른 학파의 유배인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주유학만의 특징이 나타나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유배인에 의해 제주사회에 유학이 본격적으로 전파·보급되었음은 문과 입격자와 열녀의 증가를 통해 확인된다.

유교의 덕목 가운데 열(烈)은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것으로 유학이 정착하는 지역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관아에서 열녀의 정표정책을 시행하였고 열녀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며 후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연구』에 따르면 열녀가 증가하는 이유를 유학이 조선후기 목사와 유배인의 교화활동으로 제주사회에 정착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열녀로 정표되는 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39)</sup> 그러나 목사 등 관료에 의해서 유학이 전파되기 보다는 유배인의 교화활동

138) 김동진, 「조선시대의 제주와 오현」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2003, 234~235쪽.



과 유배인의 문하에서 유학을 배운 지역 유생에 의해 전파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14〉 제주 열녀의 신분·시기별 분포<sup>140)</sup>

시기 신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계
양반	1	-	-	5	17	8	31
중인	-	-	-	2	1	-	3
상민	-	-	1	2	8	-	11
천민	-	1	1	4	2	-	8
미상	1	-	-	-	3	3	7
총합	2	1	2	13	31	11	60

〈표 13〉 과 〈표 14〉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배인 중 제주유학에 최초로 영향을 끼친 이익이 유배된 시기는 17세기 초반이고 17세기 중반부터 문과 입격자가 증가하게 되며 18세기에 이르러 열녀가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유배인을 통해 전파된 유학이 문하에게 먼저 전파되고 이를 기반으로 문과 입격자가 급증하게 되며, 이후 일반민에게까지 유학이 전파되어 18세기 열녀의 증가로 이어지는 유학이 제주도에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학이 전파되는 시기가 육지에 비해 1세기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은 섬이라는 고립성과 육지와 제주도를 연계해줄 정치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주유배인은 육지와 제주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媒介)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에 유학이 전파·발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 2. 유배인과 입도조의 형성

제주유배인 261명 중 159명이 본관이 확인 되는데 총 69개의 성씨를 가진 인

139) 김지혜,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40) 김지혜, 앞의 논문, 24쪽.

물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sup>141)</sup> 제주유배인 중 10명이 제주유배가 끝난 후 본인, 혹은 자식들이 제주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친족을 형성하였다. 입도조는 크게 유배인 본인이 제주도에 정착한 경우와 본인은 복귀하지만 유배 준 결혼을 통해 낳은 후손들이 제주도에 정착한 경우, 그리고 유배인의 아들이 제주도에 정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 15〉 제주유배인 중 입도조

유배인	연도	신분	사유	기간	장소	비고
김만희	태조원년 (1392)	관료	왕의임명거부	1392 ~미상	제주목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입도조. 정착.
한천	태조원년 (1392)	관료	조선건국반대	1392 ~미상	정의현 (가시리)	청주한씨 입도조. 면책 후 가시리에 정착
이미	-	관료	왕의임명거부	-	미상	경주이씨입도조. 정착.
이세번	증종15년 (1520)	관료	기묘사화연좌	1520 ~1526	대정현	고부이씨입도조 유배중사망. 아들 이충현이 제주도에 정착
이익	광해군10년 (1618)	관료	인목대비폐도 반대	1618.11.16 ~1623.3.12	대정현	경주이씨국당파 입도조. 위리안치, 제주도에서 결혼 후 육지로 복귀 아들 이인제가 정착.
박승조	인조원년 (1623)	관료	형의사건에연좌	1623 ~1636	제주목 (곽지리)	밀양박씨입도조의부. 아들 박자호와 같이 유배음. 본인은 서울로 소환. 아들은 정착
이덕인	인조22년 (1644)	왕족	왕으로추대되 었다는이유	1644.4.24 ~1644.7.29	대정현	전주이씨계성군입도조의 부. 안치, 유배중사사, 아들 이광형이 제주에 정착
이지달	현종	-	예송논쟁관련	-	대정현 (감산리)	수안이씨 입도조 유배 중 같이 온 아들 이시호가 오씨 결혼 후 이지달과 이시호는 복귀하고 아들 이보운이 정착
김응주	-	미상	사화연좌	1647~1649년 사이로추정	미상	김해김씨 사군파입도조, 제주목사 김여수와 친족.
김예보	숙종15년 (1689)	관료	기사환국	1689 ~미상	미상	김해김씨 양의공김경서파입도조. 유배후 제주에 정착.

(자료: 『조선왕조실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로 표시함.)

유배인 본인이 정착이유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유배인이 제주도로 유배된 후 정착한 예로 김만희와 한천, 이미가 있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새로운 왕조의 임명을 거부한 죄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유배가 끝나도 복귀하지 않고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김응주의 경우 정확한

141) 본고 77쪽 〈부록3〉 본관별 유배인수 참조.

유배연도가 확인되지 않지만 인조 25년(1647)에 부임한 제주목사와 인척관계로 자주 왕래가 있었던 점을 볼 때 1647년에서 1649년 사이에 유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유배 중 도민과 결혼 하여 유배인은 복귀하고 그 자손들이 제주도에 정착한 경우는 이익과 이지달의 사례에서 보이는데 광해군 10년(1618) 인목대비 폐비를 반대한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된 이익은 유배 중 김진용과 고흥진 등 후학을 양성하면서 제주도에 유학이 정착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현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인제를 낳았는데 인조 원년(1623) 사면되어 이익은 복직하지만 부인과 아들은 그대로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이지달은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아들 이시호와 함께 제주도로 왔는데 이시호가 오씨와 혼인을 하여 아들 이보운을 낳았다. 그 후 이지달과 이시호는 유배가 끝나 복귀하고 있지만 이보운은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배인의 아들이 제주도에 정착한 사례는 이세번, 박승조, 이덕인의 유배를 통해 확인된다.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중종 15년(1520) 유배된 이세번이 유배 중 사망하자 아들 이충현이 제주도로 내려와 장례를 치른 후 제주도에 그대로 정착하였다. 박승조는 형인 박승중이 인조반정 때 자살을 하는 사건에 연좌되어 막내아들인 박자호를 데리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인조 13년(1636)년에 유배가 풀려 박승조는 복귀하지만 박자호는 제주도에서 결혼을 한 상태라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이덕인은 심기원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이유로 인조 22년(1644) 제주도에 유배되어 3개월 만에 사사되었는데 아들 이팽형이 이보다 먼저 제주도에 내려와 정착하면서 이덕인은 경주이씨 계성군파의 입도조가 되었다.

제주유배인을 살펴보면 유배가 풀린 후 관직에 복귀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정치에 염증을 느껴 관직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유배인 본인이 제주도에 정착한 경우는 5명의 사례에서만 나타나는데 소수가 제주도에 정착한 이유로 낙향을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고향에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배인 중 극소수만 제주도에 정착하였다고 판단된다.

유배인이 제주도 여성과 혼인을 한 경우도 이익과 이지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데 이익과 이지달은 유배가 풀리자 이익은 관료로 복귀하고 이지달은 고향으로 복귀하는 점으로 볼 때 유배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제주도 여성을 첩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익은 현마공신 김만일의

딸과 혼인을 하고 있는데 김만일은 조정에 말 500필을 기부할<sup>142)</sup> 정도로 부자였다. 이는 유배인은 경제적 지원을, 지역유지는 명망 있는 양반과의 혼인으로 제주도내에서의 지위향상이라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유배인과 제주도 지역유지의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142) 『광해군일기』 156권 12년 9월 4일 무인조. 「傳曰 金萬鎰獻馬五百匹 超資實職除授 其子大鳴守令除授 次子大聲升堂上 其孫金礪本道邊將除授」.

## VI. 맺음말

제주유배는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선에 이르러 유형제도가 정착하면서 제주도는 유배지로써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섬이라는 고립성과 폐쇄성, 그리고 중앙에서 가장 먼 지역 중 하나라는 지리적인 특징은 추방과 격리라는 유형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제주도를 최악의 유배지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제주유배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선조 제주유배인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유배인을 분석하여 조선조 제주도가 유배지로써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형의 종류는 『대명률』에서 정의내린 유(流) 2천리, 2천5백리, 3천리로 구분되며 천도, 충군, 변원충군, 수군충군, 도배,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변원정배, 극변정배, 절도안치, 절도정배, 감사정배, 위노 등으로 다양하게 집행되었다. 제주유배의 경우 위리안치가 가장 많았는데 위리안치와 천극안치, 충군, 위노, 서민강등을 제외한 나머지 유배는 용어는 다르지만 유배인의 생활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유배는 조선의 정치세력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유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를 6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기인 태조 원년(1392)부터 예종 원년(1469)까지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왕권강화를 위해 공신과 외척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제주유배가 이루어졌다. 2기인 성종 즉위년(1469)부터 선조 41년(1608)까지는 사림의 중앙정계진출로 인해 훈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화로 인해 제주유배가 나타난다. 3기는 광해군 즉위년(1608)부터 경종 4년(1724) 재위시기로 사림이 중앙정계에 정착하고, 봉당정치가 조선정치에 반영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세력 간의 대립으로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그리고 영조 즉위년(1724)·정조 24년(1800) 재위기간인 4기에는 영·정조 즉위 반대사건과 탕평정치 시행에 반대하는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제주유배가 나타났으며 5기는 순조 즉위년(1800)이후 세도정치 기간 동안의 사회혼란으



로 인해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기는 고종 18년(1881) 이후부터 외세의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친외세력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결과로 제주유배가 나타났다.

유배인은 제주목에 가장 많이 유배되었지만 4개 지역에 고루 유배되었다. 고종 18년(1881) 제주로 이속된 추자도 역시 제주도 삼읍의 유배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데 제주유배의 특징을 볼 때 중앙에서는 제주도를 하나의 유배지로 인식하기 보다는 삼읍과 추자도를 각각 개별 유배지로 인식하였다.

제주유배인의 신분을 살펴보면 관료가 대부분이지만 왕족과 외척, 그리고 종교인과 여성, 환관 등 다양한 신분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17명의 왕족 중 왕으로 추대된 4명은 사사되었으며, 관료의 경우 고위관료와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등 삼사출신 관료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또한 외관직에 있던 관료 역시 17명이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고위관료와 함께 실무직에 있었던 관료들이 집중적으로 제주도로 유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신분에서 제주유배 후 사사되거나 서울로 이송되어 사망·사사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형의 가감(加減)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유배인 중 사망·사사하는 대부분이 2년 이내에 형이 재집행되면서 제주유배는 사형을 감하는 형벌인 동시에 사사되는 죄인으로 발생하는 여론과 민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도로 유배인이 집중되었다.

조선사회에 있어서 제주도는 유배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관료가 제주목사 임용을 거부한 사례도 있지만, 제주도로 유배된 유배인의 경우 제주도가 살기 힘든 지역으로 유배되기 이전부터 인식되면서 제주유배생활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유배인들의 문집이나 서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었다. 유배인의 유배생활은 위리안치와 천극안치, 충군, 정역, 위노, 서민강등 형을 집행 받은 유배인과 다른 유형으로 유배된 유배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위리안치와 천극안치인 경우 원래에는 외출이 금지되고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외출만 금지될 뿐 인적교류는 가능하였다.

그 외의 유형은 유배인의 행동에 제약이 없었고 이동이 자유로워 제주도의 유생과 교류·교학하면서 제주유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주유학과 유배인의 상관성은 광해군 10년(1618) 이익이 대정현에 유배되면서 시작되어 기사환국으로

인해 숙종 15년(1689) 노론세력이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제주 유학은 서적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이었던 것이 이익의 유배 이후부터는 유배인을 통해 중앙의 유학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호학과나 영남학과와 같이 한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주로 유배된 유배인의 학파에 따라 그들의 성향도 변화하였다. 학문적인 기반이 약했던 제주도의 경우 관료나 유배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학을 접하기 어려웠으며 제주유배가 대부분 정치세력의 변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일정한 학파의 성향을 갖지 않는 제주유학만의 특징이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제주유배인 중 일부가 입도조로써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친족을 형성한다. 또한 유배인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을, 토착세력에게는 명망 있는 양반과의 혼인으로 제주도에서의 지위 향상이라는 상호이익으로 인해 유배인과 토착세력과의 혼인이 나타났다.

제주도가 조선에서 최악의 유배지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는 오늘날에 만들어진 시각이 아니라 과거 조선조 제주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제주풍토기」, 「제주풍토록」 등 여러 문집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며 261명의 제주유배인 분석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제주도는 한양에서 가장 먼 지역임과 동시에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왕족, 외척, 관료 등 조선사회에 있어서 상류층이라 볼 수 있는 집단이 집중적으로 유배되었고 유배된 후 사망한 유배인이 많은 점, 유형의 죄가 가중되어 타 지역으로 이배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죄인이 유배된 지역으로 최악의 유배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

제주유배인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유배인과의 비교·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 지역 유배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어 유배지로써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징을 찾기는 어려웠다. 어떻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나듯이 유배인은 유배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조선조 지방사를 연구하는 데 유배인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배인을 통하여 중앙의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 및 사상들이 유배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에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중앙으로의 진출도 가능하였다. 그런 점에서 향후 유배인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실태분석을 떠나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 주체로서 유배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배인의 영향으로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파악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1> 조선조 유배지설정기준

유형지 거주지	유 삼천리	유 이천오백리	유 이천리
경성·경기좌 우도·유후사	경상·전라, 함길·평안도· 빈해각관	경상·전라·평안·함길 도·중앙각관, 강원도·빈 해각관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시면각관, 강원도 중앙각관
황해도	경상·전라도 중앙, 평안· 강계도·의주 각관	전라·경상·평안·함길도 시면 각관	충청도 빈해, 강원도 중앙 각관
평안도	충청도 빈해각관, 함길도 중앙각관	충청도 중앙각관, 강원·함 길도 시면각관	충청도 시면각관
충청도	평안·함길도 중앙각관, 경 상·전라도 빈해각관	평안·함길도 시면각관, 강 원·황해도 중앙각관	전라·경상도 중앙, 황해 함길도 시면각관
전라도	경상좌도 빈해각관, 함길· 평안도 중앙각관	황해도 시면각관, 강원도 중앙각관, 경상 좌도각관	강원도 시면, 충청상면·경 상우도 각관
경상도	전라우도 빈해각관, 평안도 중앙각관	경상·전라도 중앙각관, 황 해도 빈해각관	충청도 서면, 전라 좌도각 관
함길도	경상·충청·경상우도 빈 해각관	경상·전라도 중앙각관, 황 해도 빈해각관	충청·황해도 중앙, 전라 경상도 시면각관
강원도	전라·경상우도 각관, 황해 도 빈해각관	전라·경상도 중앙각관, 황 해도 빈해, 평안도 시면각 관	충청·황해도 중앙, 평안도 시면, 경상·전라좌도 빈해 각관

<부록2> 시기별 제주유배인 목록

I. 1기 유배인 목록: 태조 원년(1392) ~ 예종 1년(1469)

유배인	연 도	유배사유	유배기간	유배 지역	출 전	비 고
김만희	태조원년 (1392)	왕의 임명거부	-	제주목	-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입도조.
한천	태조원년 (1392)	조선 건국반대	-	정의현	-	면책후가시리에 정착 청주한씨 입도조.
이미	태종원년 (1401)	왕의 임명거부	-	미상	-	경주이씨 입도조.
민무구	태종9년 (1409)	협유집권	1409.10.14 ~1410.3.17	미상	태종실록9년10월14일, 태종실록10년3월17일	안치 가내와노비포 함, 사사.
민무질	태종9년 (1409)	협유집권	1409.10.14 ~1410.3.17	미상	태종실록9년10월14일, 태종실록10년3월17일	안치 가내와노비포함, 사사.
모지리	태종23년 (1411)	기생과간통 하다질투로	1441.8.10 ~	미상	세종실록23년8월10일	안치, 복귀날짜알 수 없음.
신이중	세조2년 (1456)	-	1456.6.27 ~1459.6.28	미상	세조실록2년6월27일, 세조실록5년6월28일	위노.
김치례	세조11년 (1465)	형김치의의 사건에연좌	1465.4.19 ~1474.12.3	미상	세조실록11년4월19일, 성종실록5년12월3일	관노, 양이됨.
부황	세조11년 (1465)	조진경사건 관련	1465.12.1 ~	미상	세조실록11년12월1일	위노.
민수	예종원년 (1469)	실록수정	1469.4.27 ~1470.4.29	미상	예종실록1년4월27일, 성종실록1년4월29일	관노로 영속, 관리로 재임용.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고 특징이 없  
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II. 2기 유배인 목록: 성종 즉위년(1469.11) ~ 선조 41년(1608)

유배인	연 도	유배사유	유배기간	유배 지역	출 전	비 고
윤후	성종13년 (1482)	폐비윤씨사 건관련	1482.8.17 ~1495.9.20	미상	성종실록13년8월17일, 연산군일기1년9월20일	안치.
최유연	-	-	~1497.7.1	미상	연산군3년7월1일	정역.
김순손	연산군2년 (1495)	왕의난폭합 을음간	1496.3.28 ~1497.7.1, 1504.3.12 ~1504.3.30	대정현	연산군일기2년윤3월28일, 연산군일기3년7월1일, 연산군일기10년3월12일	충군, 제주민호로편 입.
홍유손	연산군4년 (1498)	무오사화 연좌	1498.9.16 ~	미상	연산군일기4년9월16일	위노, 중종반정 이후 석방.
송산	연산9년 (1503)	다른이의종 을 구타하여	1503.11.20 ~	미상	연산군일기9년11월20일	가족포함. 복귀날짜 알 수 없음.
홍상	연산군10년 (1504)	갑자사화 연좌	1504.5.19 ~1505.10.3	미상	연산군일기10년5월19일, 연산군일기11년10월3일, 중종실록8년4월9일	부처.
유현	연산군10년 (1504)	갑자사화 연좌	1504.6.25 ~1506.10.13	미상	연산군일기10년6월25일, 중종실록1년10월13일	위노, 방환 중 수몰.
김양보	연산군10년 (1504)	왕의명령 거부	1504.6.25 ~1506.10.13	대정현	연산군일기10년6월25일, 중종실록1년10월13일	위노, 방환 중수몰.
이원	연산군10년 (1504)	무오사화 연좌	1504.9.26 ~10.24	미상	연산군일기10년9월26일, 연산군일기10년10월24일	위노, 유배중 갑자사 화로 사사.
한충인	연산군10년 (1504)	아들죄에 연좌	1504.10.7 ~	미상	연산군10년10월7일,	위노, 복귀날짜알 수 없음.
이각탑	연산11년 (1505)	아버지사건 에연좌	1505.5.6 ~	미상	연산군일기11년5월6일	위노,복귀날짜알수없 음.
박인손	연산군12년 (1506)	지신패약	1506.3.24 ~	미상	연산군일기12년3월24일	정역.
김정	중종14년 (1519)	기묘사화 연좌	1520.6.17 ~1521.10.17	제주목	중종실록15년6월17일, 중종실록16년10월17일	절도안치 중 사사, 제주풍토록저술.
이세번	중종15년 (1520)	기묘사화 연좌	1520 ~1526	대정현	중종실록 15년7월15일	고부이씨 입도조, 유배 중 사망.
김세한	중종29년 (1534)	조부의죄 연좌	1534.1.28 ~1538.1.29	미상	중종실록29년1월28일, 중종실록33년1월29일	위리안치.
유희춘	명종2년 (1547)	양재역벽서 사건연루	1547.9.19 ~1567.10.12	미상	명종실록2년윤9월4일, 명종실록2년9월19일, 선조실록즉위년10월12일	절도안치, 종성으로 이배, 관리로 재임 용.
이희손	명종10년 (1555)	왜구를방비 하지못함	1555.9.5 ~1556	미상	명종실록10년9월5일, 명종실록11년8월13일	충군, 관리로 재임용
보우	명종20년 (1565)	혹세무민	1565.6.25 ~1565	미상	명종실록20년6월25일	유배지에서 사망.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고 특징이 없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Ⅲ. 3기 유배인 목록: 광해군 즉위년(1608) ~ 경종 4년(1724)

유배인	연 도	유배사유	유배기간	유배 지역	출 전	비 고
이홍로	광해군즉위년 (1608)	무고죄	1608.3.15 ~1608.9.1	대정현	광해군일기즉위년3월15일, 광해군일기즉위년9월1일	절도안치 중 사사.
신희업	광해군3년 (1612)	계축사화연 좌	1612.4.29 ~	미상	광해군일기4년4월29일	복귀날짜알수없음.
송상인	광해군4년 (1612)	김직재의무 옥연루	1612.4.25 ~1623.3.14	미상	광해군일기4년4월25일, 인조실록1년3월14일,	위리안치.
이태경	광해군4년 (1612)	왕으로추대되 었다고무고	1612.9.3 ~1612.11.1	미상	광해군일기4년9월3일, 광해군일기4년11월1일	위리안치, 사사.
정은	광해군6년 (1614)	영창대군 처형비판	1614.7.4 ~1623.3.16	대정현	광해군일기6년7월4일, 인조실록1년3월16일	위리안치, 동계집 등 저 술.
김언춘	광해군6년 (1614)	무고	1614.11.25 ~1615.9.6	대정현	광해군일기6년11월25일, 광해군일기7년9월6일	절도안치, 유배중 사 망.
김덕룡	광해군6년 (1614)	무고	1614.11.25 ~1615.9.5	정의현	광해군일기6년11월25일, 광해군일기7년9월5일	절도안치, 유배 중 사망.
이정경	광해군7년 (1615)	관마절도	1615.11.3 ~	정의현	광해군일기7년11월3일	정배, 복귀날짜알 수 없음.
김제남 부인노 씨	광해군10년 (1618)	남편의죄 연좌	1618.10.15 ~1623.3.14	제주목	광해군일기10년10월15일, 광해군일기15년3월14일	유배.
이익	광해군10년 (1618)	인목대비 폐모반대	1618.11.16 ~1623.3.12	대정현	광해군일기10년11월16일,	위리안치, 경주이씨 국당과 입도조.
조직	광해군11년 (1619)	폐모반대	1619.5.14 ~	대정현	전고대방, 광해계축사화조	-
원종	광해군12년 (1620)	반역죄에 연좌	1620.7.15 ~1623	정의현	광해군일기12년7월15일, 인조실록1년.5월4일	유배지 중 사사.
서신	인조원년 (1623)	폐모론주장	1623.4.2 ~	정의현	인조실록1년4월2일	안치, 복귀날짜알 수 없음.
박승조	인조원년 (1623)	형의사건에 연좌	1623 ~1636	제주목	-	곽지박씨 입도조의 부.
인성군 부인윤 씨	인조6년 (1628)	모반죄에 연좌	1628.5.27 ~1635.6.8	정의현	인조실록6년5월27일, 인조실록13년6월8일	이배.
이길	인조6년 (1628)	모반죄에 연좌	1628.5.27 ~1635.6.8	정의현	인조실록6년5월27일, 인조실록13년6월8일	이배.
이익	인조6년 (1628)	모반죄에 연좌	1628.5.27 ~1635.6.8	정의현	인조실록6년5월27일, 인조실록13년6월8일	이배.
이건	인조6년 (1628)	모반죄에 연좌	1628.5.27 ~1635.6.8	정의현	인조실록6년5월27일, 인조실록13년6월8일	이배. 제주풍토기를 저술.
인성 군딸	인조6년 (1628)	모반죄에 연좌	1628.5.27 ~1635.6.8	정의현	인조실록6년5월27일, 인조실록13년6월8일	이배.

광해군	인조15년 (1637)	좌상한죄	1637.6.6 ~1641.7.1	제주목	인조실록15년4월17일, 인조실록19년7월10일	위리안치, 유배 중 사망.
박인성	인조20년 (1642)	변방보고 조작	1642.2.25 ~	미상	비변사등록인조20년2월25일	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윤승겸	인조20년 (1642)	송사를 차주일으킨죄	1642.3.8 ~	미상	비변사등록인조20년3월8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신득연	인조21년 (1643)	이계사건과 관련	1643.4.29 ~1647.5.13	미상	인조실록21년4월29일, 인조실록25년5월13일	안치, 소헌세자아들 안치로 거제도로 이 배.
이덕인	인조22년 (1644)	왕으로추대되 었다는이유	1644.4.24 ~1644.7.29	대정현	인조실록22년4월24일, 인조실록22년7월29일	안치, 유배지 중사사, 아들이팽향은 전주이 씨계성 군입도조
이경여	인조23년 (1645)	이저비방	1645 ~1648.윤3.17	미상	인조실록26년윤3월17일	소헌세자아들안치로 이배.
홍무적	인조24년 (1646)	강빈사건 관련	1645.3.14 ~1648	정의현	인조실록24년3월14일, 인조실록26년윤3월17일	위리안치.
이석철	인조25년 (1647)	강빈사건 관련	1647.8.1 ~1648.3.4	미상	인조실록25년5월13일, 인조실록26년9월18일, 승정원일기인조26년4월3일	위리안치, 유배 중 사망.
이석린	인조25년 (1647)	강빈사건 관련	1647.8.1 ~1648.12.23	미상	인조실록25년5월13일, 인조실록26년12월23일	위리안치, 유배 중 사망.
이석건	인조25년 (1647)	강빈사건 관련	1647.8.1 ~1649.3.17	미상	인조실록25년5월13일, 인조실록27년3월17일	위리안치.
김응주	-	사화연좌	-	미상	-	김해김씨 사군과 입 도조.
김록	효종4년 (1653)	미상	1653.7.16 ~	대정현	비변사등록효종4년7월16일	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골계선	효종4년 (1653)	폐해를조장	1653.7.16 ~	정의현	비변사등록효종4년7월 16일	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송지렴	현종5년 (1664)	추관으로옥 사를잘못다 스려서	1664.10.1 ~1673.5.1	정의현	현종실록5년10월1일, 현종실록14년5월1일	유배, 장흥으로이배.
신명규	현종15년 (1674)	영능의석역 에근무하지 않아서	1674.5.11 ~1680	대정현	현종실록15년5월11일, 숙종실록8년4월27일	절대정배, 목계기문 록저술, 진도로 양이 됨.
이정기	현종15년 (1674)	영능의석역 에근무하지 않아서	1674.5.11 ~1683.7.16	정의현	현종실록15년5월11일, 숙종실록9년7월16일	유배.
이지달	-	붕당	-	대정현	-	손자이본운이 수안이 씨 입도조.
유필명	숙종1년 (1675)	상소문으로 인해	1675.윤5.23 ~	정의현	숙종실록1년윤5월23일	복귀날짜 알 수없음.
임창군	숙종5년 (1679)	왕으로추대 하려한다는 무고	1679.3.19 ~1682.6.1	제주목	숙종실록5년3월19일, 숙종실록8년6월1일	가족동행, 해남으로 이배.

임해군	숙종5년 (1679)	임창군을왕으로추대하려한다는 무고	1679.3.19 ~1682.6.1	정의현	숙종실록5년3월19일, 숙종실록8년6월1일	가족동행, 해남으로 이배.
유혁연	숙종6년 (1680)	경신환국	1680.4.21 ~1680.9.5	대정현	숙종실록6년4월21일, 숙종실록6년9월5일	위리안치, 사사.
김삼달	숙종11년 (1685)	기밀누설	1685.8.20 ~	제주목	숙종실록11년8월20일	가족포함.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송시열	숙종15년 (1689)	기사환국	1689.2.4 ~1689.6.3	제주목	숙종실록15년2월4일, 숙종실록15년6월3일, 숙종실록15년6월3일	친극안치, 방환 중 사사.
김예보	숙종15년 (1689)	기사환국	1689 ~	미상	-	김해김씨양의공김경 서파의 입도조.
김진구	숙종15년 (1689)	인현왕후 폐 출반대	1689.6.21 ~1694.4.1	제주목	숙종실록15년6월21일, 숙종실록15년9월21일, 숙종실록20년4월1일	절도안치, 복귀후 관 리로 재임용.
이진상	숙종16년 (1690)	무고죄	1690.12.21 ~	미상	숙종실록16년12월21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민암	숙종20년 (1694)	갑술환국	1694.4.2 ~1694.7.8	대정현	숙종실록20년4월2일, 숙종실록20년7월8일	안치, 서울로이송 후 사사.
김덕원	숙종20년 (1694)	갑술환국	1694.윤5.18 ~1697.4.24	미상	숙종실록20년윤5월18일, 숙종실록23년4월24일	절도안치, 해남으로 이송.
장희개	숙종20년 (1694)	갑술환국	1694.5.20 ~1701.9.23	대정현	숙종실록20년5월20일, 숙종실록27년9월23일	위리안치, 서울로 이 송된 후 공개주살.
송상주	숙종20년 (1694)	선비를업신 여긴죄	1694.5.26 ~1702.5.17	대정현	숙종실록20년5월26일, 숙종실록28년5월17일	이배됨.
이현명	숙종22년 (1696)	시사극론죄	1696.9.15 ~1697.4.24	미상	숙종실록22년9월15일, 숙종실록23년4월24일	정배.
이동설	숙종26년 (1700)	지신 패약	1700.2.2 ~	대정현	숙종실록26년2월2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신우석	숙종26년 (1700)	지신 패약	1700.2.2 ~	대정현	숙종실록26년2월2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김준완	숙종26년 (1700)	지신 패약	1700.2.2 ~	대정현	숙종실록26년2월2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수없음.
박중경	숙종26년 (1700)	지신 패약	1700.2.2 ~	대정현	숙종실록26년2월2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유항	숙종27년 (1701)	상소문탄핵	1701 ~1708	미상	영남인물고	-
오시복	숙종28년 (1702)	장희빈복위 기도	1702.5.14 ~1712.5.13	대정현	숙종실록28년5월14일	위리안치, 강진으로 이배.
송성	숙종29년 (1703)	과거부정	1703.10.12 ~	제주목	숙종실록29년10월12일	위노.
오석하	숙종29년 (1703)	과거부정	1703.10.12 ~	대정현	숙종실록29년10월12일	위노.

민시준	숙종29년 (1703)	과거부정	1703.10.12 ~	정의현	숙종실록29년10월12일	위노.
김춘택	숙종32년 (1706)	폐비윤씨 복위운동	1706.8.22 ~1712.5.13 1712.9.30 ~1714	제주목	숙종실록32년8월22일, 숙종실록38년5월13일, 숙종실록40년12월14일	정배.
조성복	경종2년 (1722)	세제대리 청정요청	1722.5.4 ~1723.4.28	정의현	경종실록2년5월4일, 경종실록3년4월28일	안치, 사형판결 확정 되자 자살.
신임	경종2년 (1722)	역모처벌을 하지않은 대신을 논핵	1722.4.1 ~1725.4.6	대정현	경종실록2년4월1일, 영조실록1년4월6일	위리안치, 사면복귀 중 병사.
김수천	경종2년 (1722)	임인무옥 관련	1722.5.4 ~1725.3.25	제주목	경종실록2년5월4일, 영조실록1년3월25일	절도정배.
학손	경종2년 (1722)	임인무옥 관련	1722.5.4 ~1725.3.25	대정현	경종실록2년5월4일, 영조실록1년3월25일	절도정배.
김덕재	경종3년 (1723)	폐비윤씨복 위운동연좌	1723.1.10 ~	제주목	경종수정실록3년1월10일	유배, 복귀날짜알 수 없음.
김선재	경종3년 (1723)	폐비윤씨복 위운동연좌	1723.1.10 ~	정의현	경종수정실록3년1월10일	유배, 복귀날짜알 수 없음.
김기손	경종3년 (1723)	폐비윤씨복 위운동연좌	1723.1.10 ~	추자도	경종수정실록3년1월10일	유배, 복귀날짜알 수 없음.
이수민	경종3년 (1723)	임인무옥 관련	1723.5.13 ~1724	정의현	경종실록3년5월13일, 영조실록1년3월25일	절도정배 중 사망.
유성추	경종3년 (1723)	임인무옥 연좌	1723.9.6 ~1725.3.2	미상	경종실록3년9월6일, 영조실록1년3월2일, 영조실록3년10월6일	위리안치.
윤각	경종3년 (1723)	임인무옥 연좌	1723.9.6 ~1724.1.10	미상	경종실록3년9월6일, 경종실록4년1월10일	위리안치, 서울로 이 송 후 형신 중 사망.
조정빈	경종3년 (1723)	부친의죄 연좌	1723.12.19 ~1725.3.2	정의현	경종실록3년12월19일, 영조실록1년3월2일,	정배.
조성집		동생의원죄 를강소	~1723.12.30	미상	경종실록3년12월30일	-
이시필	경종4년 (1724)	향국흉언죄	1724.1 ~1724.윤4.9	정의현	경종실록4년윤4월9일	서울로 이송 중 남해 에서 자살.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고 특징이 없  
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 IV. 4기 유배인 목록: 영조 즉위년(1724) ~ 정조 24년(1800)

유배인	연 도	유배사유	유배기간	유배 지역	출 전	비 고
윤지	영조1년 (1725)	김일경관련	1725.6.25 ~1736.3.19	대정현	영조실록1년6월25일, 영조실록12년3월19일	위리안치.

이현장	영조1년 (1725)	김일경관련	1725.4.18 ~1727.7.5	미상	영조실록1년4월18일, 영조실록3년7월5일	절도에 위리안치.
김요경	영조1년 (1725)	세자책봉반 대	1725.9.20 ~	대정현	영조실록1년9월20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서종하	영조1년 (1729)	세자책봉 반대	1725.3.25 ~	대정현	영조실록5년9월28일,	1728년 서울로압송 되어 1730년 장살됨.
이의철	-	이종성의재 상반대	-	미상	귀은당집, 조선인명사전	-
임정하	영조3년 (1727)	탕평정치 비판	1727.7.3 ~1730.6.21	대정현	영조실록3년7월3일, 영조실록6월21일,	위리안치, 서울로 후송 후 장살.
김유경	영조3년 (1727)	김일경일당 의국정비판	1727.10.26 ~1728.12.7	대정현	영조실록3년10월26일, 영조실록4년12월7일	위리안치, 영광으로 이배.
윤봉조	영조4년 (1728)	탕평정치를 배척하는 상소문관련	1728.1.23 ~1730.9.18	정의현	영조실록4년1월23일, 영조실록6년9월18일	안치, 양이됨
환성 지안	영조5년 (1729)	대법회를무 구해서	1729. ~	미상	조선불교통사	대둔사비문, 제주불교 2006년10월19일기사.
이진유	영조5년 (1729)	신임무옥패 중해적역할	1729.9.28 ~1730.5.13	추자도	영조실록5년9월28일, 영조실록6년5월13일	취조 중 사망, 속사미 인곡저술.
이만유	영조5년 (1729)	채평윤과국 조보감에관 한상소문으 로왕의반감	1729.12.14 ~1732.6.21	대정현	영조실록5년12월14일, 영조실록8년6월21일	절도안치, 육지로 출 륙.
조관빈	영조7년 (1731)	탕평정치 비판	1731.10.27 ~1732	대정현	영조실록7년10월27일, 회헌집	정배.
권영	영조9년 (1733)	왕의실정을 상소	1733.1.14 ~1733.1.20	대정현	영조실록9년1월14일, 영조실록9년1월20일	절도정배, 해남현으 로 이배.
이선철	-	-	-	대정현	-	-
김성탁	영조13년 (1737)	은사의원죄 호소	1737.6.2 ~1037.10.17	정의현	영조실록13년6월2일, 영조실록13년10월17일, 제산집 제산선생문집권지2 시	절도안치.
이명언	영조13년 (1737)	무고	1737.3.10 ~1743.3.20	대정현	영조실록13년3월10일, 영조실록19년3월20일	절도정배.
이하택	영조13년 (1737)	무고	1737.3.10 ~	정의현	영조실록13년3월10일	절도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김원재	영조16년 (1740)	숙종의위시 를 비장	1740.11.2 ~	미상	영조실록16년11월2일, 영조실록23년10월9일	해도정배.
이규채	영조16년 (1740)	당파색채가 길다	1740.11.2 ~1741.11.2	대정현	영조실록16년11월2일, 영조실록17년11월2일	천극형. 감형되어 양 이.
민창수	영조18년 (1742)	상소문으로 인해	1742.1.29 ~1744.2.6	대정현	영조실록18년1월29일, 영조실록20년2월6일	정배.
정실	영조19년 (1743)	국가형정의 잘못을상소	1743.4.26 ~	대정현	영조실록19년4월26일, 영조실록24년2월14일	유배, 복귀날짜알 수 없음.



김우태	영조23년 (1747)	비리	1747.5.23 ~	제주목	영조실록23년5월23일	무기한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임명주	영조23년 (1747)	탕평 정치 비판	1747.12.23 ~1748.11.29	대정현	영조실록23년12월23일, 영조실록24년11월29일	배도압거.
이증	영조25년 (1749)	투서가정치 문제화	1749.10.8 ~1752.6.17	제주목	영조실록25년10월8일, 영조실록28년6월17일	유배지에서 사망.
이존중	영조27년 (1751)	탕평 정치 비판	1751.7.2 ~1753	정의현	영조실록27년7월2일, 회헌집	이배되어음. 복귀 날 짜 알 수없음.
홍준해	영조28년 (1752)	상소문으로 인해	1752.10.29 ~1753.6.3	추자도	영조실록28년10월29일, 영조실록29년6월3일	위리안치.
이성술	영조29년 (1753)	목삭되었던 인물들을해 면하여서	1753.4.14 ~	대정현	영조실록29년4월14일	무기도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조영순	영조30년 (1754)	상소문으로 인해	1754.11.27 ~1755.1.23	대정현	영조실록30년11월27일, 영조실록31년1월23일	유배, 해남현으로 이 배.
목덕복	영조31년 (1755)	목호룡의 죄에연좌	1755.2.29 ~	정의현	영조실록31년2월29일	이배되어음, 복귀날짜 알 수 없음.
목덕성	영조31년 (1755)	목호룡의 죄에연좌	1755.2.29 ~	대정현	영조실록31년2월29일	이배되어음,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김윤홍	영조31년 (1755)	김일경의죄 에연좌	1755.3.1 ~	제주목	영조실록31년3월1일	이배되어음, 복귀날짜 알 수 없음.
박재하	영조31년 (1755)	초사증색목 이라는내용 이있어서	1755.3.23 ~	대정현	영조실록31년3월23일, 영조실록35년11월8일	무기귀양.
심내복	영조31년 (1755)	심정연변서 사건관련	1755.5.14 ~1763.8.27	정의현	영조실록31년5월14일, 영조실록39년8월27일	유배 중 반란기도, 서울로 후송 후 교 형
심양복	영조31년 (1755)	심내복사건 에연좌되어	1755.5.14 ~1763.11.20	정의현	영조실록 39년11월20일	심내복이 삼촌의 사건에연좌되 어 유배된 점으로보아 같은 날 에 유배되었을거라 판단됨
조영향	영조31년 (1755)	이전을자식 스승으로삼 았다하여	1755.5.16 ~	정의현	영조실록31년5월16일	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송유부 친	영조31년 (1755)	밀풍군가족 과혼사를맺 었다하여	1755.7.23 ~	정의현	영조실록31년7월23일	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권평	영조31년 (1755)	권소사건에 연좌	1755.10.27 ~	대정현	영조실록31년10월27일	위노, 복귀날짜알 수 없음.
이거원	영조31년 (1755)	심정연홍서 사건으로	1755.3.12 ~1755.7.9	대정현	영조실록31년3월12일, 영조실록31년7월9일	서울 이송 후효시.
최학령	영조32년 (1756)	붕당	1756. ~	정의현	-	-
조종명	영조33년 (1757)	이용협외파 직을상소	1757.9.5 ~	대정현	영조실록33년9월5일	친극, 복귀날짜알 수 없음.

조영득	영조33년 (1757)	미상	1757 ~1763.8.27	미상	영조실록39년8월27일	심내복과 반란모의, 서울로이송후 복주(사형).
유동훈	영조33년 (1757)	미상	1757 ~1763.8.27	미상	영조실록39년8월27일	심내복과 반란모의, 서울로이송후 복주(사형).
한광조	영조38년 (1762)	세자 폐위 반대	1762.6.1 ~1762.7.11	대정현	영조실록38년6월1일, 영조실록38년7월11일	정배, 홍산으로 이배됨.
임관주	영조43년 (1767)	대신비판	1767.6.9 ~1767.9.5	대정현	영조실록43년6월9일, 영조실록43년9월5일	유배, 창고천에서가 있음.
장지세	영조46년 (1770)	비리	1770.4.23 ~	추자도	영조실록40년4월23일	정배하되 무기한 금고, 복귀날짜알수없음.
권진응	영조47년 (1771)	상소문문제	1771.3.14 ~1772.1.14	대정현	영조실록47년3월14일, 영조실록48년1월14일	유배, 적려유허비가 있음.
이일증	영조47년 (1771)	이기경관련 상소	1771.4.24 ~1772.2.18	추자도	영조실록47년4월24일, 영조실록48년2월18일	천극형.
은언군	영조47년 (1771)	왕의학대	1771 ~1773.5.12	대정현	영조실록50년5월12일	-
은신군	영조47년 (1771)	왕의학대	1771 ~1771.4.12	대정현	영조실록47년4월12일	적거중사망.
유강	영조48년 (1772)	반대세력 임용거부	1772.3.21 ~	추자도	영조실록48년3월21일	투비, 복귀날짜알수없음.
권엄	영조49년 (1773)	유생과관련 상소	1773.7.17 ~1773.11.28	추자도	영조실록49년7월17일, 영조실록49년11월28일	절도안치.
이석보	영조51년 (1775)	외방에있었다는이유	1775.6.26 ~	추자도	영조실록51년6월26일	정배, 복귀날짜알수없음.
황근	영조51년 (1775)	황택인사건 관련	1775.7.3 ~	추자도	영조실록51년7월3일	총군, 복귀날짜알수없음.
윤복후	영조51년 (1775)	황택인사건 관련	1775.7.3 ~	대정현	영조실록51년7월3일	서민으로 강등,복귀날짜알수없음.
단체	정조즉위년 (1776)	조재환의죄에연좌	1776.4.5 ~	제주목	일성록정조즉위년4월5일 최종기사	관비, 복귀날짜알수없음.
조덕순	정조즉위년 (1776)	조재환의죄에연좌	1776.4.5 ~	제주목	일성록정조즉위년4월5일 최종기사	관비, 복귀날짜알수없음.
문성국모	정조즉위년 (1776)	사도세자죽음에연좌	1776.3.30 ~	미상	정조실록즉위년3월30일	관비, 복귀날짜알수없음.
심상운	정조즉위년 (1776)	영조시기대리 청정을반대	1776.4.2 ~1776.7.22	대정현	정조실록즉위년4월2일	천극, 서울로 압송 후 사사.
강덕엽	정조즉위년 (1776)	역마를타고 역졸을구타	1776.7.30 ~	정의현	정조실록즉위년7월30일	위노, 복귀날짜알수없음.
홍찬해	정조즉위년 (1776)	정조즉위 반대	1776.8.28 ~1777.9.24	정의현	정조실록즉위년8월28일, 정조실록1년9월24일	이배되어음. 유배 중 사사.

조완	정조즉위년 (1776)	정후검과관련 되었다하여	1776.9.27 ~1782.12.3	제주목	정조실록즉위년9월27일, 정조실록6년12월3일	이배되어음.
홍지해	정조1년 (1777)	정조즉위 반대	1777.1.16 ~1777.9.24	추자도	정조실록1년1월16일, 정조실록1년9월24일	유배 중 사사.
심익운	정조1년 (1777)	패륜의죄	1777.1.16 ~	대정현	정조실록1년1월16일, 정조실록6년1월14일	이배되어음, 복귀 날짜 알 수 없음.
홍계능	정조1년 (1777)	반란기도	1777.4.8 ~	대정현	정조실록1년4월8일,	안치,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조정철	정조1년 (1777)	정조시해사 건관련	1777.8.11 ~1805.7.26	제주목	정조실록1년8월11일, 정조실록6년1월14일, 순조실록5년7월26일, 일성록정조원년정유9월11일	절도안치, 정현 영해처감록저 술, 후에 제주 목사로 부임.
윤홍렬	정조1년 (1777)	민홍섭사건 관련	1777.8.18 ~1778.윤6.18	추자도	정조실록1년8월18일, 정조실록2년윤6월18일	절도징배.
이경빈	정조2년 (1778)	반란기도	1778.10.20 ~	대정현	정조실록2년10월20일,	신지도에서이배 되어음. 복귀날 짜 알 수 없음.
오도옥	정조3년 (1779)	완영의막비 매개물탐함	1779.1.15 ~1782.12.3	추자도	정조실록3년1월15일, 정조실록6년12월3일	징배.
노성중	정조3년 (1779)	선대왕조매 임용거부	1779.6.15 ~	대정현	정조실록3년6월15일, 일성록정조3년6월15일	장기현에서 이 배됨. 복귀날짜 알 수 없음.
문경행	정조3년 (1779)	유배지이탈	1779.7.25 ~	추자도	정조실록3년7월25일	갑산에서이배 됨.
이보행	정조4년 (1780)	서명응처벌 요구	1780.1.8 ~1787.7.18	추자도	정조실록4년1월8일,	절도안치, 유배 중 사망.
홍주익	정조4년 (1780)	남구만등3 인을묘당에 서출향시킬 것을항소	1780.11.22 ~1784.8.3	정의현	정조실록4년11월22일, 정조실록8년8월3일	위리안치.
이취중	정조6년 (1782)	무옥에연좌	1782.6.28 ~	추자도	정조실록6년6월28일	절도천극, 유배 중 사망.
유악주	정조8년 (1784)	심낙수처벌 관련	1784.12.14 ~1793.4.16	추자도	정조실록8년12월14일, 정조실록17년4월16일	유배.
혜암 유장	정조8년 (1784)	전라관찰사 에무고당해	1784. ~	미상	이조불교	-
송환구	정조9년 (1785)	반역사건 관련	1785.12.18 ~	추자도	정조실록9년12월18일	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김우진	정조10년 (1786)	완풍군 역모관련	1786.12.10 ~1792.2.10	대정현	정조실록10년12월10일, 정조실록16년2월10일	위리안치, 교동 으로 이배됨.
구순	정조11년 (1787)	상관모함	1787.1.3 ~	미상	정조실록11년1월3일, 일성록정조11년1월3일	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유인호	정조12년 (1788)	탕평정치 비판	1788.12.5 ~1790.3.27	대정현	정조실록12년12월5일. 정조실록14년3월27일	위리안치.

조시위	정조13년 (1789)	완풍군 역모관련	1789.5.12 ~	제주목	정조실록13년5월12일	이배, 가극,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안조환	-	공문서위조	-	추자도	가사선집	만연사 저술.
신기현	정조16년 (1792)	이재간의사 주로상소를 올려서	1792.11.24 ~	제주목	정조실록16년11월24일,	유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이경일	정조18년 (1794)	언로의개방 을진언하였 다가	1794.4.28 ~1794.6.1	제주목	정조실록18년4월28일, 정조실록18년6월1일	무기유배.
이정운	정조18년 (1794)	언로의개방 을진언하였 다가	1794.4.28 ~	제주목	정조실록18년4월28일, 정조실록19년윤2월19일	무기유배복귀날짜 알 수 없음.
최수로	정조18년 (1794)	언로의개방 을진언하였 다가	1794.4.28 ~	제주목	정조실록18년4월28일	무기유배복귀날짜 알 수 없음.
강이천	정조21년 (1797)	천주교교리 를배워민심 혹란	1797.11.12 ~1801.3.16	제주목	정조실록21년11월12일, 순조실록1년3월16일	유배.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고 특징이 없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 V. 5기 유배인 목록: 순조 즉위년(1800) ~ 고종 17년(1880)

유배인	연 도	유배사유	유배기간	유배지역	출 전	비 고
홍낙임	순조1년 (1801)	신유박해	1801.4.27 ~1801.5.29	제주목	순조실록1년4월27일, 순조실록1년5월29일	위리안치.
이치훈	순조1년 (1801)	신유사육관 련	1801.11.5 ~	제주목	순조실록1년11월5일	유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정난주	순조1년 (1801)	황사영백서 사건연좌	1801 ~1838.2.1	대정현	순조실록, 황사영백서의 연구	관노.
홍재민	순조4년 (1804)	상소문이문 제가되어	1804.11.19 ~1821.2.11	추자도	순조실록4년11월19일, 순조실록21년2월11일	안치.
김용묵	순조4년 (1804)	전지를쓰지 않아서	1804.11.19 ~	추자도	순조실록4년11월19일	안치,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서형수	순조6년 (1806)	안동김씨세력 의탄핵으로	1806.4.20 ~1809.9.22	추자도	순조실록6년4월20일, 순조실록9년9월22일	절도안치, 양이됨.
김필주	순조6년 (1806)	김한록사건 연좌	1806.5.20 ~	정의현	순조실록6년5월20일	안치,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김인주	순조6년 (1806)	김한록사건 연좌	1806.5.20 ~	추자도	순조실록6년5월20일	안치,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김정환	순조10년 (1810)	궁인파짜고 역관등재	1810.2.6 ~	추자도	순조실록10년2월6일	노예로삼아징배, 복 귀날짜 알 수 없음.

유철개	순조17년 (1817)	홍서사건 관련	1817.1.22 ~	추자도	순조실록17년1월22일	안치, 복귀날짜알 수 없음.
서만수	순조27년 (1827)	백성착취	1827.4.1 ~1827.5.28	추자도	순조실록27년4월1일, 순조실록27년5월28일	우리안치.
김기서	순조27년 (1827)	반역도모	1827.8.19 ~1835.1.17	추자도	순조실록27년8월19일, 현종실록1년1월17일	우리안치, 방송됨.
윤상도	순조30년 (1830)	박종훈,신위, 유상량처벌 상소	1830.8.28 ~1840.7.10	추자도	순조실록30년8월28일일, 현종실록6년7월10일	정배, 서울로이송후 사사됨.
강시환	현종2년 (1836)	국경모독	1836.2.5 ~1840.12.6	추자도	현종실록2년2월5일, 현종실록6년12월6일	절도안치.
김정희	현종6년 (1840)	윤상도홍소 사건	1840.9.4 ~1848.12.6	대정현	현종실록6년9월4일, 현종실록14년12월6일, 완당집	우리안치.
이학수	현종7년 (1841)	성균관유생 들의상소로	1841.1.10 ~1849.3.5	추자도	현종실록7년1월10일, 현종실록15년3월5일	천극(우리안치).
민달용	현종10년 (1844)	비봉을바꿈	1844.4.28 ~1853.3.6	정의현	현종실록10년4월28일, 철종실록4년3월6일	위노.
맹학술	현종10년 (1844)	-	1844.9.6 ~	추자도	현종실록10년9월6일	정배, 복귀날짜알 수 없음.
이종협	현종10년 (1844)	-	1844.9.6 ~	제주목	현종실록10년9월6일	정배, 복귀날짜알 수 없음.
박희영	현종14년 (1848)	아편빠는기 구밀수입	1848.5.9 ~	추자도	현종실록14년5월9일	위노.
이승현	현종14년 (1848)	상소문으로 인해	1848.11.22. ~1850.7.10	정의현	현종실록14년11월22일, 철종실록2년7월10일	우리안치.
이명혁	철종4년 (1853)	김수정모반 사건	1853.11.27 ~1864.7.11	제주목	철종실록4년11월27일	안치.
최봉주	철종4년 (1853)	김수정모반 사건	1853.11.27 ~1876.5.19	추자도	철종실록4년11월27일, 고종실록13년윤5월19일	감사안치, 전라도능 주목에 이배 후 사 사.
엄희영	철종12년 (1861)	아버지사건 에연좌	1861.11.14 ~1864	제주목	철종실록12년11월14일, 고종실록 1년5월18일	위노,고종1년 조대비 의 특사에 의해 석 방.
백낙신	철종13년 (1862)	탐학불법죄	1862.4.15 ~1865.1.1	제주목	철종실록13년4월15일, 고종실록2년1월1일	우리안치,이듬해 전 리방축.
김시연	철종13년 (1862)	민란책임	1862.7.10~ 1863.7.30. 1864.1.1 ~1865.1.2	제주목	철종실록13년7월10일, 고종실록1년1월10일, 고종실록 2년1월2일	우리안치, 후에가극형에 처해중법으로 귀급후 전 리방축, 다시 제주도 유 배후 전리방축
이하진	철종13년 (1862)	왕으로추대 되었다고 무고	1862.7.25~ 1862.8.11	제주목	철종실록13년7월25일, 철종실록13년8월11일	안치, 유배지에서 사 사.
심이택	고종1년 (1864)	정비미부정 유용	1864.3.4 ~1865.10.15	제주목	고종실록1년3월4일, 고종실록2년10월15일	우리안치.

구성희	고종1년 (1864)	과거부정	1864.5.14 ~	제주목	고종실록1년5월14일	제주로 속임, 충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정만식	고종7년 (1870)	진주민란모 반죄	1870.9.10 ~	추자도	고종실록7년9월10일, 승정원일기고종7년9월10일, 승정원일기고종31년4월30일	정배,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최익현	고종10년 (1873)	대원군정치 탄핵	1873.11.12 ~1879.2.9	제주목	고종실록10년11월12일, 고종실록16년 2월9일	위리안치, 후에 관리로 복직.
김복성	고종12년 (1875)	시험부정	1875.4.30 ~1879.2.26	제주목	고종실록12년4월30일, 고종실록16년2월26일	무기정배, 복과.
조병창	고종13년 (1876)	민비경권을 개문영적	1876.1.26 ~1879.2.9	추자도	고종실록13년1월26일, 고종실록16년2월9일	방축향리.
정태호	고종13년 (1876)	압행어사의 서계관련	1876.9.11 ~1879.2.9	제주목	고종실록13년9월11일, 고종실록16년2월9일	위리안치.
이희당	고종16년 (1879)	과거부정	1879.3.13 ~1880.6.9	제주목	고종실록16년3월13일, 고종실록17년6월9일	제주로 속임, 충군 후 복과.
남정호	고종16년 (1879)	과거부정	1879.3.25 ~1880.6.9	제주목	고종실록16년3월25일, 고종실록17년6월9일	춘천으로 속임, 충군 후 복과.
박영훈	고종16년 (1879)	과거부정	1879.3.25 ~1880.6.9	제주목	고종실록16년3월25일, 고종실록17년6월9일	나주로 속임, 충군 후 복과.
민영서	고종16년 (1879)	과거부정	1879.3.25 ~1880.6.9	제주목	고종실록16년3월25일, 고종실록17년6월9일	상주로 속임, 충군 후 복과.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대한계년사』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고 특징이 없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 VI. 6기 유배인 목록: 고종 18년(1881) ~ 순종 2년(1909. 7.12)

유배인	연 도	유배사유	유배기간	유배지역	출 전	비 고
김평목	고종18년 (1881)	척양, 척왜의 소를초안	1881.윤7.23 ~1882.6.12	미상	고종실록18년윤7월23일, 고종실록19년6월12일	위리안치.
이태현	고종18년 (1881)	탐람학민죄	1881.6.13 ~1884.8.1	제주목	고종실록18년6월13일, 고종실록21년8월1일	삼배도로 압송. 위리안치, 후에 방축향리.
이재선	고종18년 (1881)	왕위 폐립의 쿠데타때 수령으로추대	1881.10.26 ~1881	제주목	승정원일기고종18년10월27일, 대한이년사고종18년10월26일	안치, 유배 중 사사됨. 정확한사망일 확인불가.
백낙관	고종19년 (1882)	친일, 용이정 책규탄	1882.10.6 ~1883.8.29	제주목	고종실록19년10월6일, 고종실록20년8월29일	위리안치, 사사됨.
윤상화	고종19년 (1882)	상소문으로 인해	1882.12.11 ~1884.3.23	제주목	고종실록19년12월11일, 고종실록21년3월23일	위리안치.
안효제	고종30년 (1893)	상소문이신 노에저촉되어	1893.8.23 ~1894.6.8	추자도	고종실록30년8월23일, 고종실록31년6월8일	안치.



이민평	고종32년 (1895)	춘생문사건 연좌	1895.12.6 ~1896.2.11	제주목	승정원일기고종32년12월6일, 고종실록33년2월11일	종신유형.
이충구	고종32년 (1895)	춘생문사건 연좌	1895.12.6 ~1896.2.11	제주목	승정원일기고종32년12월6일, 고종실록33년2월11일	종신유형.
전우기	고종32년 (1895)	춘생문사건 연좌	1895.12.6 ~1896.2.11	제주목	승정원일기고종32년12월6일, 고종실록33년2월11일	종신유형.
노홍규	고종32년 (1895)	춘생문사건 연좌	1895.12.6 ~1896.2.11	제주목	승정원일기고종32년12월6일, 고종실록33년2월11일	종신유형.
서주보	고종33년 (1896)	친일파	1896.4.18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3년4월18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종신유형, 여도로 이배.
정병조	고종33년 (1896)	친일파	1896.4.18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3년4월18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종신유형, 위도로 이배.
김경하	고종33년 (1896)	친일파	1896.4.18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3년4월18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종신유형, 녹도로 이배.
이범주	고종33년 (1896)	친일파	1896.4.18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3년4월18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10년유형, 신지도로 이배.
이태황	고종33년 (1896)	친일파	1896.4.18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3년4월18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종신유형, 사도로 이배.
홍우덕	고종33년 (1896)	친일파	1896.4.18 ~	추자도	고종실록33년4월18일	1년유형, 정확한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안관현	고종33년 (1896)	박원로사건 에연좌	1896.6.13 ~	추자도	고종실록33년6월13일	1년형,복귀날짜알 수 없음.
정원로	고종33년 (1896)	박원로사건 에연좌	1896.6.13 ~	추자도	고종실록33년6월13일	5년유형.
임녹길	고종33년 (1896)	박원로사건 에연좌	1896.6.13 ~	추자도	고종실록33년6월13일	2년유형.
이근용	고종34년 (1897)	군사쿠테타 기도	1897.3.15 ~1897.10.28	제주목	고종실록34년3월15일, 고종실록34년10월28일	10년유형.
김낙영	고종34년 (1897)	군사쿠테타 기도	1897.12.14 ~	제주목	고종실록34년12월14일	15년유형,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김사관	고종34년 (1897)	군사쿠테타 기도	1897.3.15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4년3월15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10년유형, 임자도로 이배.
장윤선	고종34년 (1897)	군사쿠테타 기도	1897.3.15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4년3월15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7년유형, 금감도로 이배.
이용호	고종34년 (1897)	군사쿠테타 기도	1897.3.15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4년3월15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7년유형, 신지도로 이배.
한선희	고종34년 (1897)	군사쿠테타 기도	1897.3.15 ~1903.7.7	제주목	고종실록34년3월15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고종실록43년4월10일	10년유형, 추자도로 이배.
김윤식	고종34년 (1897)	친일내각외 무대신	1897.12.20 ~1901.6.7	제주목	고종실록34년12월20일, 고종실록38년6월7일	종신징배, 지도로 이배.
이승오	고종34년 (1897)	친일	1897.12.20 ~1900.8	제주목	고종실록34년12월20일, 고종실록44년7월16일	종신징배, 1900년 병사.

이원규	고종35년 (1898)	인심혹란	1898 ~	제주목	대한이년사, 독립협회연구	-
여규형	고종35년 (1898)	인심혹란	1898 ~	제주목	대한이년사, 독립협회연구	-
지석영	고종35년 (1898)	인심혹란	1898 ~	제주목	대한이년사, 독립협회연구	-
안기중	고종35년 (1898)	인심혹란	1898 ~	제주목	대한이년사, 독립협회연구	-
김필제	고종36년 (1899)	방화후반란 모의	1899.12.13 ~	추자도	고종실록36년12월13일	종신유형, 복귀날짜 알 수 없음.
윤재보	고종36년 (1899)	방화후반란 모의	1899.12.13 ~	추자도	고종실록36년12월13일	15년형, 복귀날짜 알 수 없음.
길영수	고종38년 (1901)	망령된말의 파트러서	1901.4.23 ~1901.5.21	추자도	고종실록38년4월23일, 고종실록38년5월21일	15년형.
이세직	고종42년 (1905)	한일협정서 위반	1905.10.22 ~1907.11.28	추자도	고종실록42년10월22일, 순종실록즉위년11월28일	종신유형.
박영효	고종44년 (1907)	대신암살음 모문책	1907.8.27 ~1909	제주목	국사대사전, 한민족의성광	일본에 후작을하사받고 중추원고문으로 임명.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대한계년사』 참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하고 특징이 없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 <부록3> 본관별 제주유배인수

본 관	유배인수	본 관	유배인수	본 관	유배인수	본 관	유배인수	본 관	유배인수
강릉김씨	1	남포백씨	1	안동장씨	1	장수황씨	1	평산신씨	3
경주김씨	6	단양이씨	1	양성이씨	1	전의이씨	1	평창이씨	1
경주이씨	5	달성서씨	3	양주조씨	4	전주유씨	2	풍산홍씨	1
경주최씨	1	덕수이씨	1	여산송씨	1	전주이씨	24	풍양조씨	3
고령신씨	1	동래정씨	1	여흥민씨	7	전주최씨	1	풍천임씨	3
고부이씨	1	동북오씨	1	연안김씨	2	진주강씨	2	한산이씨	4
광산김씨	8	밀양박씨	1	연안이씨	3	진주유씨	1	함안윤씨	2
광주노씨	1	반남박씨	1	연일정씨	1	청송심씨	5	함안조씨	1
광주이씨	1	사천목씨	2	용인이씨	2	청주한씨	2	함양여씨	1
기계유씨	1	선산윤씨	1	원주김씨	1	청풍김씨	5	해평윤씨	2
김해김씨	3	수안이씨	1	원주이씨	1	청해이씨	2	미상	105
나주박씨	1	순흥안씨	1	은진송씨	1	초계정씨	1		
나주정씨	1	신창맹씨	1	의령남씨	1	충주지씨	1		
남양홍씨	9	안동권씨	3	의성김씨	1	파평윤씨	1	총합	261명

(참고: 한국인명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대전회통(大典會通)』  
『대정군읍지(大靜郡邑誌)』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속대전(續大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일성록(日省錄)』  
『정의읍지(旌義邑誌)』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제주읍지(濟州邑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김상현, 『남사록(南槎錄)』  
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충암집』  
남만리, 『탐라지(耽羅誌)』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규창집』  
이원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이원진, 『탐라지(耽羅誌)』  
이증, 『남사일록(南槎日錄)』  
이진유,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이형상, 『남환박물(南宦博物)』  
임징하, 『서재집(西齋集)』  
정은, 『동계집(桐溪集)』  
조관빈, 『회헌집(悔軒集)』  
조정철,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 2. 연구논저

### 1) 단행본

고찬화·김천형 공편, 『濟州의 近世史-朝鮮王朝實錄』, 성민출판사, 2002.  
고창석, 『濟州歷史研究』, 세림, 2007.  
\_\_\_\_\_,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통천문화사, 2001.  
\_\_\_\_\_, 『한국문화와 제주』, 서경,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탐구당, 2003.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세림, 2000.  
김봉현, 『濟州道流人傳』,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권인혁·조상제, 『한국근대농민항쟁사(韓國近代農民抗爭史)』, 느티나무, 1993.  
다산연구회, 『역주목민심서』 V, 창작과비평사, 198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조인물고』, 2007.  
예술의전당, 『추사(秋史) 한글편지』, 우일출판사, 2004.  
안조환 씀·양순필 편저, 『만언사산고(萬言詞散稿)』, 제주문화사, 1990.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제주유배문학자료집(I)』,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연구』, 국학자료원, 2004.  
이원진 씀·김찬흡외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형상 씀·이상규·오창명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제민일보, 『제주인명사전』, 1994.  
제주도, 『제주선현지(濟州先賢誌)』, 제주도, 1988.  
\_\_\_\_\_, 『제주유배문화관 기본계획』,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 제주도, 2006.  
 제주문화원, 『역주 증보탐라지』, 2005.  
 제주유림육백년사편찬위원회, 『제주유림육백년사』, 학문사, 1997.  
 조정철 씌, 김익수 역,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제주문화원, 2006.  
 추자도지편찬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2001.  
 탐라명감편찬위원회, 『탐라명감(耽羅明鑑)』, 일봉삼장원, 1981.  
 한국법제연구원, 『역주당률소의』,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한국인명사전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95.

## 2) 논문 및 기타

강재연, 「濟州道 流配期の 金允植」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고범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고석규,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생활에 대하여」 『도서문화』 제24집, 목포대학교도서 문화연구소, 2005.  
 고정우, 「桐溪 정은의 流配漢時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고창석,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_\_\_\_\_, 「조선왕조시대 제주유배인의 동향: 남제주군지역을 중심으로」 『남제주』 제46호, 남제주군, 2005.  
 \_\_\_\_\_, 「朝鮮朝의 流刑制度和 濟州島」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고창석·양진건,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庵 崔益鉉의 教學活動研究」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고행미,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권인혁, 「19세기초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 탐라문화연구소, 1988.
-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통권67호, 역사문제연구소, 2004.
- \_\_\_\_\_,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 1998.
- \_\_\_\_\_, 「17세기 후반 한 儒生의 유배살이」 『선비문화』 제12호, 남명학연구원, 2007.
- 김동진, 「조선시대의 제주와 오현」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2003.
- \_\_\_\_\_, 「朝鮮後期 濟州 大靜縣 鄕吏層의 身分變動」 『사학지』 28, 단국대사학회, 1995.
- \_\_\_\_\_,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대정현 東城·中文·自丹·今勿路里 호적중초의 사례분석」 『역사민속학』 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 \_\_\_\_\_,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 「大靜懸戶籍中草」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주곤, 「流配歌辭에 나타난 忠節意識 樣相」 『한민족어문학』 16, 한민족어문학회, 1989.
- 김지혜,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양식,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박찬식, 「양제해 모변과 상찬계」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_\_\_\_\_, 「제주교안 이후(1901~1910) 제주지역 천주교회의 동향」 『서귀포문화』 제3호, 서귀포문화원, 1997.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제92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 이민홍, 「尤庵의 長髻 流配生活 實相과 著作活動」 『한국어문학연구』 27, 한국어문학회, 2001.
- 양순필,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고」 『한국언문학』 16권, 한국언어학회, 1978.
- \_\_\_\_\_, 「濟州流配人朝의 開化敎學活動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23, 고



- 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0.
- \_\_\_\_\_, 「朝鮮朝 流配文學研究:濟州島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2.
-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양진건, 「朝鮮朝 濟州島 敎育施設」 『탐라문화』 제1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 장선영, 「조선시기 유배와 절도정배의 추이」,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후수,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生活」 『한성어문학』 15권,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6.
- 조평환, 「秋史 金正喜의 流配書簡에 나타난 濟州의 生活情緒」, 한서대학교동양고전연구소, 2007.
- 지철호, 「朝鮮前期의 流刑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진영일, 「조선시기 제주 신인 기사 검토」 『탐라문화』 제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유대흑기(遊大黑記)> 를 통해 본 조선후기 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권, 2010.
- 한창덕,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황경수, 「해방 이전 제주향로의 변천사 연구」 『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홍순만, 「조선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 『제주도연구』 3, 제주도연구회, 1986.